


의정활동보고서



제254회 임시회(2012. 4. 27 ~ 5. 11)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활기찬 모습으로 제254회 경상
북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
합니다.

먼저 지난 4. 11 보궐선거에서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구미시
출신 이태식 의원님과 김봉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
니다.

앞으로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비회기중에도 기슈광산 진실규명 방문,
일본교과서 독도 왜곡규탄, 해빙기 안전 점검, 정책연구
연찬회 등 각자 맡은 분야와 지역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4. 11 총선도 잘 마무리 되었고, 이제 완전한 봄을 느낄 수 있지만 서민들은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입니다.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휘발유 가격이 100일 넘게 연속 상승, 서민경제에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천정부지로 뛰는 물가는 서민 가계에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며, 영세상인들은 대형마트 진출로 장사가 안돼 불만이 높습니다.

당면한 업무 추진에 바쁘실 줄압니다만, 그동안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민생을 챙기는데 우리 모두 전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는 선거 분위기에서 벗어나 선거 기간중 표출된 도민의 크고 작은 목소리들을 도정에 반영하고, 선거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는 등 화합과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두가 협조해 주시고, 오늘 개회식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4월 2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孝

차 례

I. 개	황	261
II. 의사일정		263
III. 의안처리		269
IV. 민원처리		271
V. 본회의 보고사항		273
VI. 5분 자유발언		292
□ 김희수 의원(기획경제위원회/포항)		292
□ 박기진 의원(농수산위원회/성주)		296
□ 이 달 의원(교육위원회/경주)		300
□ 황상조 의원(기획경제위원회/경산)		305
□ 추재천 의원(교육위원회/교육3)		308
□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안동)		313

부 록

- 조례안 : 20건(원안가결 14, 수정가결 6) 319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483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54회 임시회는 2012년 4월 27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11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와 8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4월 27일(금)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김희수 의원의 “저출산 대책 개선방안”과 박기진 의원의 “남부권 국제 신공항 건설 재추진”, 이달 의원의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사건 예방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회의록 서명의 건, 휴회의 건 등 5가지 안건을 의결하였다.

5월 11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한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상조·추재천 의원의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촉구”,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지역사회 토요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촉구”와 김명호 의원의 “신재생에너지 활용방안”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안전심사에 있어서는 253회 접수분 1건을 포함하여 20건의 조례안과 2건의 결의안 및 기타안을 심의하였다.

조례안 중 ‘경상북도 의회 정책연구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고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을 수정 가결하였다. 또한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결의안' 및 '경상북도지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본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관급 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이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 유보되었고,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이 밖에 회기중에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해 독도박물관을 방문하여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고, 문화환경위원회에서는 안면도 자연휴양림, 백제문화단지 등 타·시도의 문화환경 프로젝트 현장을 직접 찾아 성공사례 및 운영 실태를 비교 견학하였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구미시 죽향쉼터 등 도내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하여 시설견학 및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우수기를 대비하여 영강지구 및 모동지구의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자연재해로 인해 도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당부하였다.

Ⅱ.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45조

다. 집회일시 : 2012년 4월 27일(금) 14: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12년 4월 27일 ~ 5월 11일(15일간)

나. 개의횟수

○ 본회의 : 2회(누계 43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문화 환경	농수산	건설 소방	교육	특 위	
									예결	기타
금 회	8	1	1	2	1	1	1	1		
누 계	243	20	32	33	26	23	30	25	29	25

※ 누계는 제9대 의회 개의횟수

3. 활 동

가. 본회의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4:00 (제1차)	☐ 개회식 ☐ 5분 자유발언 ○ 기획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안동) ○ 농수산위원회 박기진 의원(성주) ○ 교육위원회 이 달 의원(경주) ☐ 안전처리 ○ 제25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11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휴회의 건	
5. 11(금) 11:00 (제2차)	☐ 5분 자유발언 ○ 기획경제위원회 황상조 의원(경산) ○ 교육위원회 추재천 의원(교육3) ○ 건설소방위원회 김명호 의원(안동) ☐ 안전처리(폐회) ○ 경상북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11(금) 11:00 (제2차)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 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5:00 (제1차)	☐ 안전심사 ○ 제2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5: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5.1(화) ~5.3(목)	☐ 현장방문 ○ 소형공항조성지, 독도박물관, 울릉군청 ○ 사동항 2단계 사업지, 죽도 ○ 소수력발전소, 저탄소 녹색마을·건물 사업현장 등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5:3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조례안	
4. 30(월) 11:00 (제2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안	
5.2(수) ~5.4(금)	☐ 현지확인 ○ 칠곡군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 구미시 죽향 쉼터 ○ 봉화군 어린이집, 영주시종합사회복지관 ○ 문경시립요양병원, 의성군 안사공동체	

〈문화환경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30(월) 11: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생활체육진흥조례안 ○ 경상북도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현안사항 보고 ○ 경북관광개발공사 인수 추진상황 보고	
5.1(화) ~5.3(목)	☐ 현지확인 ○ 타시도 문화환경 프로젝트 현장방문 ▪ 전북(무주), 충남(예산, 서산, 태안, 부여)	

〈농수산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5:50 (제1차)	☐ 결의안 채택 ○ 한-미 FTA보완 및 한-중 FTA 농어업 분야 제외 촉구	
5. 1(화) ~5. 3(목)	☐ 타지역 선진지 견학 ○ 해양수산연구원 및 농산물 원종장 ○ 제주 경마장	
5. 9(수)	☐ 현지확인 ○ 가음면 저수지 둑 높이기 현장 ○ 춘산면 지당들 사업장	의성군

〈건설소방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27(금) 15:00 (제1차)	☐ 안전심사 ○ 경상북도낙동강연안개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5. 2(화) ~5. 3(목)	☐ 현장방문 ○ 낙동강자전거길(구미보~낙단보) ○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 ▪ 영강지구(상주 함창) ▪ 모동지구(상주 모동)	

〈교육위원회〉

개 의 일 시	심 의 안 건	비 고
4. 30(월) ~5. 1(화)	☐ 현지확인 ○ Wee센터(포항·구미교육청) 및 Wee버스(칠곡교육청) ○ 영재교육(경상북도 과학교육원)	
5. 7(월) 10:30 (제1차)	☐ 안전처리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운영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교육위원회 의결사항)	

Ⅲ. 의안처리

※ ()내는 제9대 의회 누계임

구 분		부 의	심의 · 의결					철 회	계 류	비고
			계	가 결		부 결	폐 안			
				원 안	수 정					
계		27 (259)	26(1) (253)	20 (200)	5(1) (50)	1 (3)		(3)	1 (3)	
조 례 안	소 계	21 (151)	20(1) (145)	14 (106)	5(1) (36)	1 (3)		(3)	1 (3)	
	의 회 제 안	9 (52)	8(1) (48)	7 (37)	1(1) (11)			(2)	1 (2)	
	도지사 제 출	5 (71)	5 (69)	3 (49)	2 (19)	(1)		(1)	(1)	
	교육감 제 출	7 (28)	7 (28)	4 (20)	2 (6)	1 (2)				
규 칙 안		(2)	(2)	(2)						
예산 · 결산		(13)	(13)	(4)	(9)					
동의 · 승인		1 (23)	1 (23)	1 (20)	(3)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1 (23)	1 (23)	1 (21)	(2)					
기 타 안		4 (44)	4 (44)	4 (44)						

□ 상임위 계류중인 안건(3건)

-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 조례안
(’11. 4. 22, 도지사, 농수산위원회 상정 유보)
- 경상북도 비정규학교(야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7. 7, 이달의원, ’11. 8. 31,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유보)
-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조례안(’12. 4. 17, 김하수 의원
등 21, ’12. 4. 30,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유보)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 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3		3	3	

※ 누계는 제9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 회 문 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 어업	기 타
계	6 (59)	(8)	2 (11)	3 (10)	1 (18)		(4)	(3)	(1)	(4)
의 회 운 영										
기 경 회 제	4		1	3						
행 정 보건복지	1		1							
문 화 환 경										
농 수산										
건 설 소 방	1				1					
교 육										
특 별 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나. 처 리

위 원 회	처 리					처 리 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6 (59)	2 (50)				4 (9)
의회운영						
기획경제	4	1				3
행 정 보건복지	1	1				
문화환경						
농 수 산						
건설소방	1					1
교 육						
특별위원회						

※ ()내는 제9대 의회 실적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 22건(조례안 21, 동의안 1)

제출·발의자 (제출일)	의안명	소관위원회 (회부일)
배수향 의원 등 19명 (2012. 4. 17)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2012. 4. 18)
경상북도지사 (2012. 4. 17)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 (2012. 4. 18)
경상북도지사 (2012. 4. 17)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도기욱 의원 등 29명 (2012. 4. 16)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지사 (2012. 4. 17)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보건의복지 (2012. 4. 18)
경상북도지사 (2012. 4. 17)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채옥주 의원 등 32명 (2012. 4. 17)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구자근 의원 등 28명 (2012. 4. 17)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
김하수 의원 등 21명 (2012. 4. 17)	경상북도 관급공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채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안	"
추재천 의원 등 28명 (2012. 4. 16)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
장세현 의원 등 22명 (2012. 4. 17)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환경 (2012. 4. 18)
나현아 의원 등 31명 (2012. 4. 17)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배수향 의원 등 15명 (2012. 4. 17)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발의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경상북도지사 (2012. 4. 17)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건 설 소 방 (2012. 4. 18)
경상북도교육감 (2012. 4. 16)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중·고등학교 특별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교 육 (2012. 4. 18)
"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2012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공유 재산관리계획변경안	"

2. 조례공포 사항 : 12건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공 포 일
2012. 3. 22	경상북도 교 육 감	경상북도교육청 무료 법률 상담 조례	2012. 4. 5 (제3316호)
"	"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2012. 4. 5 (제3317호)

이 송 일	이송처	건 명	공 포 일
2012. 3. 22	경상북도 지사	경상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 4. 5 (제3318호)
"	"	경상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	" (제3319호)
"	"	경상북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	" (제3320호)
"	"	경상북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 (제3321호)
"	"	경상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22호)
"	"	경상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3323호)
"	"	경상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 (제3324호)
"	"	경상북도 관광진흥 조례	" (제3325호)
"	"	경상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 (제3326호)
"	"	경상북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 (제3327호)

3. 의원신분 변동사항

선 거 구	성 명	변 동 내 역	비 고
구미시 제1선거구	이 태 식	4. 11 보궐선거	
구미시 제6선거구	김 봉 교	"	

4. 위원회 활동사항

위 원 회	일 시	장 소	활 동 내 용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2012. 3. 27 17:30	도 의 회 현관로비	• 독도문제 규탄성명서 발표 - 독도를 일본영토로 표기한 일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검정통과 관련 규탄성명 ※ 참석 : 전찬걸 · 김명호 · 최우섭 의원
"	2012. 4. 12 14:00	주한 일본 대사관 앞	• 독도문제 규탄대회 참석 - 일본, 독도문제 조기해결을 요구 하는 도쿄집회 대응 규탄대회 참석 ※ 참석 : 송필각 부의장, 전찬걸 · 최우섭 의원
정책연구 위 원 회	2012. 4.23 ~ 4.25	제주특별자치도 오리렌탈 호텔	• 정책연구위원회 및 의원연구단체 연찬회 - 2012년도 연구과제 관련 특강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방향 등 토의 ※ 참석 : 의장, 송필각 부의장, 정책연구위원 등

5. 기타 의정활동 사항

○ 경상북도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입학식 참석 및 축하

- 일 시 : 2012. 3. 24(토) 10:00
- 장 소 : 경상북도과학영재교육원
- 참 석 : 김원석 의원

○ 천안함 46용사 2주기 추모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3. 26(월) 10:00

- 장 소 : 금오공고
 - 참 석 : 변우정 의원
- 김천교육지원청 업무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3. 26(월) 14:00
 - 장 소 : 김천교육지원청
 - 참 석 : 추재천 의원
- 참부모 교육 운동특강
 - 일 시 : 2012. 3 27(화)~ 28(수) 10:00~13:00
 - 장 소 :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강당
 - 참 석 : 최우섭 의원
- 2012 세계 물의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 참석
 - 일 시 : 2012. 3 27(화) 14:00
 - 장 소 :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창숙·서정숙 의원
- 대구·경북 지역발전 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3. 28(수) 07:30
 - 장 소 : 대구 그랜드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장애인 채용박람회 참석
 - 일 시 : 2012. 3. 28(수) 11:00

- 장 소 : 포항시청
 - 참 석 : 채옥주 의원
- 구포~생곡 국도 33호선 착공식 및 안전지원제 참석
 - 일 시 : 2012. 3. 28(수) 14:00
 - 장 소 : 선산공영주차장
 - 참 석 : 박태환, 변우정, 심정규, 장영석 의원
- 군민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3. 29(목) 10:30
 - 장 소 : 봉화군 내성천 체육공원
 - 참 석 : 권영만 위원장
- 경상북도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0:20
 - 장 소 : 경주드림센터 대강의실
 - 참 석 : 최우섭 의원
- 주5일 수업 촉진단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0:3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청
 - 참 석 : 추재천 의원
- 한국노총 경북지역본부 제52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0:30

- 장 소 : 청도 경상북도근로자복지연수원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 제67회 식목일 나무심기행사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1:00
- 장 소 : 포항시 북구 지경리
- 참 석 : 이상효 의장, 장세현 위원장, 김기홍·김말분·
김원석·장두욱·한창화 의원

○ 문경새재리조트 그랜드 오픈식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1:00
- 장 소 : 문경새재리조트
- 참 석 : 이시하 의원

○ 상이군경회 경상북도지부 창립 52주년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1:00
- 장 소 : 도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 참 석 : 송필각 부의장

○ 제1회 어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4:00
- 장 소 : 포항 구룡포항
- 참 석 : 장경식·장세현 위원장, 이정호·장두욱·채옥주·
한창화 의원

○ 제28회 코오롱 고교구간 마라톤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3. 30(금) 17:30
- 장 소 : 경주 코오롱호텔
- 참 석 : 박병훈·최학철 의원

○ 도암서원 춘계대제 참석

- 일 시 : 2012. 3. 31(토) 07:00
- 장 소 : 고령 도암서원
- 참 석 : 곽광섭 의원

○ 2012 경북태권도 신인선수권대회 개최식 참석

- 일 시 : 2012. 3. 31(토) 11:00
- 장 소 : 김천실내체육관
- 참 석 : 배수향 의원

○ 경북청년협의회 연수 참석

- 일 시 : 2012. 3. 31(토) 16:30
- 장 소 : 가야산 「가야호텔」
- 참 석 : 정영길 의원

○ 제10회 영주소백산 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일) 09:00
- 장 소 : 영주시민운동장
- 참 석 : 박성만 의원

- 2012 동학문화축제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4. 1(일) 11:00
 - 장 소 : 경주실내체육관
 - 참 석 : 박병훈 의원

- 기슈광산 진실규명 일본현지 방문
 - 일 시 : 2012. 4. 2(월) ~ 4. 4(수)
 - 장 소 : 일본 구마노시, 미에현 의회
 - 참 석 : 김창숙 · 나현아 · 이영식 · 홍진규 의원

- 일본교과서 왜곡대응 전문가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4. 3(화) 16:00
 - 장 소 : 도의회 2별관 세미나실
 - 참 석 : 김명호 의원

- 동서 5축 고속도로건설 3개도 공동건의문 채택 참석
 - 일 시 : 2012. 4. 3(화) 11:3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영천 화북면 웃놀이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4(수)
 - 장 소 : 영천 지천초등학교
 - 참 석 : 김수용 의원

- **안동 천연가스 발전소 착공식 참석**
 - 일 시 : 2012. 4. 4(수) 11:00
 - 장 소 : 안동 바이오 산업단지 내
 - 참 석 : 이상용 위원장, 김명호·정상진 의원
- **제40회 보건의 날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4. 5(목) 14:30
 - 장 소 : 김천문화예술회관
 - 참 석 : 나기보·이경임·배수향 의원
- **창설 제44주년 향토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 일 시 : 2012. 4. 6(금) 15:00
 - 장 소 : 도청 강당
 - 참 석 : 이상호 의장, 윤창욱 위원장
- **제21회 경주벚꽃마라톤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7(토) 08:00
 - 장 소 : 경주 보문관광단지
 - 참 석 : 박병훈·최학철 의원
- **경북매일사장기 클럽대항 축구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4. 7(토)
 - 장 소 : 포항종합운동장
 - 참 석 : 장두욱 의원

- 경상북도지역사회재활시설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4. 10(화) 14:00
 - 장 소 : 도의회 도민의 방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 2012년도 전반기 교육전문직 연수회 참석 및 축사
 - 일 시 : 2012. 4. 12(목) 10:00
 - 장 소 : 경주교육문화회관
 - 참 석 : 이 달 의원
- 문경시장 취임식 참석
 - 일 시 : 2012. 4. 12(목) 11:00
 - 장 소 : 문경시청 대강당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이경임 · 이시하 의원
- 경상북도 기능경기대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4. 12(목) 11:00
 - 장 소 : 금오공업고등학교
 - 참 석 : 이상효 의장, 윤창욱 위원장, 박태환 · 변우정 · 심정규 의원
- 제16회 4.13 울진 홍부 만세제 참석
 - 일 시 : 2012. 4. 13(금) 10:00
 - 장 소 : 울진 북면 홍부만세제 기념공원
 - 참 석 : 황이주 의원

- 울릉군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3(금) 11:00
 - 장 소 : 울릉 남양초등학교
 - 참 석 : 이용진 의원
-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4. 13(금) 11:30
 - 장 소 : 울진원자력 대회의실
 - 참 석 : 전찬걸 의원
- 2012 의성마늘 국제연날리기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4(토) 11:00
 - 장 소 : 의성군 위천둔치
 - 참 석 : 나현아 · 이왕식 의원
- 제6회 금오산 올레길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4(토) 13:30
 - 장 소 : 금오산 대주차장 특설무대
 - 참 석 : 구자근 의원
- 국제라이온스협회 365-E(경북)지구 제24차 연차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4(토) 14: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김명호 · 이영식 의원

- **콩잎김치 공장 준공식 참석**
 - 일 시 : 2012. 4. 16(월)
 - 장 소 : 군위콩잎김치공장
 - 참 석 : 홍진규 의원
- **제50회 도민체전 개최 성공기원 교통질서지키기 실천다짐 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17(화) 14:00
 - 장 소 : 교통연수원 대강당(구미시)
 - 참 석 : 이상효 의장, 윤창욱 위원장, 변우정 의원
- **도·상주시 - L社 MOU 체결 참석**
 - 일 시 : 2012. 4. 17(화)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강영석 의원
- **제50회 도민체전 최종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4. 17(화) 15:30
 - 장 소 : 구미시청 상황실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변우정 의원
- **상주 농업기계 박람회 개막식 참석**
 - 일 시 : 2012. 4. 18(수) 11:00
 - 장 소 : 상주 북천시민공원
 - 참 석 : 강영석·한재석 의원

- 봉화 소천 두음분교장 준공식 참석 및 축하
 - 일 시 : 2012. 4. 18(수) 14:00
 - 장 소 : 봉화 소천 두음분교장
 - 참 석 : 김영기 위원장, 홍광중 의원
- 2012 청도소싸움축제 참석
 - 일 시 : 2012. 4. 18(수) 14:00
 - 장 소 : 청도 소싸움경기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박권현 의원
- 경상북도 문화 관광해설사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4. 18(수) 15:00
 - 장 소 : 성주가야산관광호텔
 - 참 석 : 박기진 의원
- 대한민국 공무원노동조합 총연맹 출범식 참석
 - 일 시 : 2012. 4. 18(목) 18:00
 - 장 소 : 도 교육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효 의장
- 경북일자리 100인 포럼 참석
 - 일 시 : 2012. 4. 19(목) 11:00
 - 장 소 : 제이스 호텔
 - 참 석 : 장경식 위원장

- **울릉군 통합방위협의회 참석**
 - 일 시 : 2012. 4. 19(목) 11:00
 - 장 소 : 울릉군청 상황실
 - 참 석 : 이용진 의원
- **제47회 영덕군민체육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20(금) 09:00
 - 장 소 : 영덕군민운동장
 - 참 석 : 박진현 의원
- **제32회 장애인의날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4. 20(금) 11:00
 - 장 소 : 경산실내체육관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서정숙·윤성규 의원
- **입시 사정관계 학부모 연수 참석**
 - 일 시 : 2012. 4. 20(금) 13:30
 - 장 소 : 경상북도교육연구원
 - 참 석 : 홍광중 의원
- **호국평화공원 조성용역 최종 보고회 참석**
 - 일 시 : 2012. 4. 20(금) 14:0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김희수 의원

- 제3회 도시계획공동 및 제4회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 일 시 : 2012. 4. 20(금)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명호, 장두욱 의원
- 제17회 형산강 사랑 포항시민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08:30
 - 장 소 : 북부해수욕장 바다시청 앞 특설무대
 - 참 석 : 김희수 · 장두욱 의원
-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도민 한마음 걷기대회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09:00
 - 장 소 : 구미시 지산동 수우지구 체육공원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박태환 의원
- 전국 사회복지사 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09:30
 - 장 소 : 경주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효 의장, 김하수 · 박병훈 · 최학철 의원
- 제21회 전국우특가야금 경연대회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10:00
 - 장 소 : 고령 대가야국악당
 - 참 석 : 광광섭 의원

- 2012 KBS 전국대학 문경장사씨름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12:40
 - 장 소 : 문경실내체육관
 - 참 석 : 고우현 위원장, 이시하 의원
- 제13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국민생활체육전국승마대회 개회식 참석
 - 일 시 : 2012. 4. 21(토) 14:00
 - 장 소 : 영천 운주산 승마장
 - 참 석 : 김수용, 한혜련 의원
- 낙동강 국토 종주 자전거길 개통 행사 참석
 - 일 시 : 2012. 4. 22(일) 10:00
 - 장 소 : 상주 경천섬
 - 참 석 : 강영석 · 한재석 의원
- 경산 의용소방대연합회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4. 23(월)
 - 장 소 : 경산소방서 대회의실
 - 참 석 : 윤성규 의원
- 제2회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 일 시 : 2012. 4. 23(월) 14:00
 - 장 소 : 영주 새마을회관
 - 참 석 : 김종천 의원

- 제19대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 참석
 - 일 시 : 2012. 4. 23(월) 18:00
 - 장 소 : 대구 인터불고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황상조 부의장, 김세호 의원
- FTA 무한경쟁시대 대응 ‘국제 워크숍’ 참석
 - 일 시 : 2012. 4. 24(화) 14:00
 - 장 소 :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 참 석 : 김영기·이상용 위원장
- 교통안전공단 신사옥 착공식 참석
 - 일 시 : 2012. 4. 24(화) 15:30
 - 장 소 : 김천 혁신도시
 - 참 석 : 나기보 의원
- 부패방지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4. 25(수) 11: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김영식 의원
- 제15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시상식 참석
 - 일 시 : 2012. 4. 25(수) 14:00
 - 장 소 : 경북도청 대강당
 - 참 석 : 이상효 의장, 장경식 위원장, 김희수·한혜련 의원

- 제22회 경북도지사기 공무원축구대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4. 25(수) 14:00
 - 장 소 : 예천군청 회의실
 - 참 석 : 정상진 의원
- 2012년 공익사업선정위원회 회의 참석
 - 일 시 : 2012. 4. 25(수) 14:30
 - 장 소 : 도의회 세미나실
 - 참 석 : 김종천·김하수 의원
- 물가지킴이 간담회 및 전통시장 살리기 투어 참석
 - 일 시 : 2012. 4. 26(목) 10:00~12:00
 - 장 소 : 경산시청 및 경산공설시장
 - 참 석 : 황상조 부의장, 김세호·김영식·김창숙·윤성규 의원
- 경상북도 의정회 정기총회 참석
 - 일 시 : 2012. 4. 26(목) 11:00
 - 장 소 : 대구 제이스호텔
 - 참 석 : 이상효 의장 등
- 시외버스 재정지원 개선방안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2. 4. 26(목) 14:30
 - 장 소 : 대경연구원
 - 참 석 : 윤창욱 위원장, 김세호·도기욱 의원

VI. 5분 자유발언

□ 2012년 4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김희수 의원(포항) ◎

<<저출산 대책 개선방안>>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포항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상북도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제정된 조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언 21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21년이라는 세월동안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서 나름대로 장족의 발전을 하였다고 자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지난 10년간 의정활동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02년에서 2010년까지 조례안 544건 등 총 958건, 그리고 2011년은 조례안 64건 등 총 11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입법 활동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양하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적 성장도 좋지만 질적 발전으로 전환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어서 아무리 많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경상북도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1월 5일 제정된 이 조례는 도내 23개 시·군에서 직접 지원한 출산장려금 외에 시·군과는 별도로 도 차원에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본 조례 제5조와 6조는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둘째 아이 이상에게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5조제2호는 저출산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자녀 가정에 보육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2조 4호 및 5호에서 명시한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95년 이후 출산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실제로 어떠한 지원을 했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출산관련 순수 도비지원 예산은 셋째아이 이상에게만 지원한 출산장려금이 2008년 3억원, 2009, 2010, 2011년 각각 8억 2,000만원이었으며, 금년에는 9억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보육지원사업은 경상북도 직속 및 산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인당 2010년 월 8만원, 2011년 월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그리고 일반도민들 중 셋째 아이 이상 자녀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 하위 7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월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조례 제5조제1호와 제6조제1항에서 규정한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 지원은 아예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가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극소수에게만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아울러 1995년 이후 2010년 말 현재 도내 출생아 수를 파악한 결과 총 45만 8,295명이며, 그 중에 첫째아이는 22만 1,034명이었고 둘째아이는 18만 9,758명, 셋째아이는 4만 756명, 넷째 아이 이상은 4,910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95년 이후 2010년 말까지 출생한 자 중에서 셋째 아이 이상은 모두 4만 5,666명인데 조례에 명시한 대로라면 당연히 1995년부터 2009년 1월 사이에 출생한 셋째아이 이상 4만 5,666명에 대해 소급을 해서라도 보육지원을 했어야 마땅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도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어렵게 도정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거나 극히 일부만
숙아서 시행된다면 그렇게 제정된 조례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
니까? 애당초 조례제정 시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된다
든지 특정조항에 문제가 있다든지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
되어 재정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든지 하면 조례심사 시 집행
부에 의견을 물었을 때 분명하게 설명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자료 근거에 따른 충분한 예산을 확보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의회에서 무리하게 강행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더라면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의거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재의를 요구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아울러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이 자리를 빌려 부락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향후 얼마나 많은 조례를 제·개정하느
냐보다는 상위법과 타 조례와의 상충관계 여부, 조례시행에 따른
예산확보와 실효성 등을 확인한 후 2010년 10월에 시행된
입법예고에 따라 조례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그래야 조례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실제 조례 내용대로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면 결국 조례의 최대 수혜자는
우리 도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박기진 의원(성주) ◎

<<남부권 국제 신공항 건설 재추진 관련>>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성주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부권 2,000만 명의 염원과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걸린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1년 전인 2011년 3월 30일 중앙정부에서 백지화 발표된 후에 그 부당함에 재추진을 강력히 요구하여 왔으나 지난 4월 11일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선거공약에서 크게 이슈화되지 못한 것을 보고 경상북도의회 동남권신공항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력함과 깊은 자괴감을 느끼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도지사님!

지사님께서서는 항상 어느 시·도지사보다도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 사람도 제발 좀 먹고 살자.”, “서울공화국 만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역설하시면서 국가 균형 발전 정책과 무분별한 수도권 규제완화 절대반대를 지속적으로 주창하여 오셨으며, 지난해에 동남권 국제신공항 백지화 건설 발표와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 실패라는 연이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사활을 건 단식투쟁을 결연히 감행하셨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

지난해 범시·도민 동남권 국제신공항 유치 서명운동에 760만 명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 지역민의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를 다시 한번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사님께 서는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오랜 세월동안 미루어만 오던 경북도청 이전지도 멋지게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평소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확고한 국가관을 가지신 김관용 도지사님이야말로 기필코 이 큰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동남권 신공항이 아니라 산재해 있는 여러 지방공항, 다시 말해서 실패한 정치적 공항들을 포함한 전체 남부권 지방공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을 강구하면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남부권 전체를 아우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등 각계각층을 대표할 수 있는 추진체를 결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테스트포스팀을 설치하고 지난날의 유치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검토 반성하면서 먼저 김관용 도

지사님께서 영남과 호남, 그리고 충청권 시·도지사 추진협의
체부터 구성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십시오.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은 해결해야 할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균형발전과 지방 생존의 문제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지역이기주의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전 국민이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목이 터져라 외치는 지방과 달리 신공항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중앙언론의 너무나 냉담한 반응과 수도권에 어느 국회의
 원이 고추나 말리는 장소로 폄하 발언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각계각층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적 시각을 긍정적 시각으로
 바꾸는 일이야말로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국제신공항 재추진은 이제 밀양과 부산 가덕도뿐만 아니라
 더 좋은 후보지가 있으면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평가해서 최적 입지가 결정되면 모든 시·도민
 들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이를 승복하는 전제하에서 추진되
 어야 합니다.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김관용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남부권 통합 신국제공항 추진이 지역간의 이해관계로 지난 4·11 총선에서는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였지만 다가오는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사업으로서 크게 보고 추진될 수 있는 이슈가 되어 국정과제로 반영됨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우리 도의회가 지금부터 함께 하나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 달 의원(경주) ◎

<<도내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사건 예방대책 촉구>>

교육위원회 소속 경주 출신 이 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4월 16일과 17일, 한 송이 꽃이 채 피기도 전에 학교폭력과 학업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세상과 연을 끊은 두 학생의 죽음에 대하여 경상북도의회 도의원이자 한 사람의 책임 있는 기성세대로서 다시는 이와 같은 슬픔과 비극이 우리 사회에 재발되지 않도록 바라는 참담한 심정에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사건 이후에 교육당국은 학교폭력을 뿌리 뽑겠다고 떠들었지만 일선 현장은 아직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이 이번 영주 중학생 사건으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안동의 여중생은 겉으로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 명랑하고 쾌활한 아이였지만 속으로는 성적만을 강조하는 우리 학교 방식에 절망을 하고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는 우리의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학교폭력과 학업 스트레스에 고통과 압박을 당하다가 극단의 길로 내몰리는 비극적인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 최근 3년간 도내 학교 폭력 현황은 총 1,33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일어난 영주중학교 경우에는 일진학생이 있다고 대답한 학생 비율이 무려 68%로 전국에서 스물한 번째이며, 경북 전체는 23.6%로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학교폭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북교육청과 일선학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실제로는 도내 학교는 2011년 현재 모두 964개에 이르고 있지만 학생들의 고민과 고충을 상담하는 등 문제해결의 절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Wee-클래스가 구축된 학교는 296개 학교로 전체 학교의 30%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내 중·고교생 총 34만 9,647명 중에 전문상담교사는 총 39명으로 학생 9,000명당 1명꼴에 불과한 실정으로 단순히 형식적인 구색만 갖춰놓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지적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런 엉성한 시스템이 품아있는 학교폭력의 뿌리를 제대로 파헤칠 수, 해결할 수 있는지 참 한심한 노릇입니다. 더욱이

불행하게도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18일 안동의 모 고등학교의 기간제교사가 제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충격적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사건의 결말이 나기 전 해당학교와 교육청에서는 사건 은폐 등과 함께 수사방해 작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니 과연 우리의 학생들을 교육할 최소한의 개념이나 자격이 있는 것인지 개탄스럽습니다. 또 23일에는 상주 고교생의 자살사건까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경북교육 어디까지 추락해야 됩니까? 학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온갖 참혹하고 부끄러운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경북교육!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경북 교육청에서 떠들어대는 명품 경북교육입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계자끼리 모여서 수박 겉핥기식의 긴급 대책 방안만 남발하고, 할 만큼 했다는 무책임한 말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일을 무책임하게 경찰이나 또 권익위원회 조사에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도교육청은 하루빨리 현장에 가서 현장조사 당장 하시고요, 관계기관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현실성 없는 대책만 내놓을 때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교육현장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할 공직자에게는 인사 조치를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각종 대책들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니라 지금도 마음의 병을, 고통을 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주실 것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셋째, 교육현장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급담임과 학생지도부장을 기피하는 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본인의 안위만을 위하여 담임 등을 기피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학교폭력에 대해서 근원적 대책도 없이 학생지도와 책임을 교사들에게만 전가하는 현 교육의 작태는 문제의 심각성만 더 키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일련의 대책도 하루빨리 수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폭력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교장과 담임교사에게만 문책을 하고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정하고 있는데다가 학부모들까지 학교 교육에 대해서 교사의 책임을 묻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어느 교사가 학급담임과 학생지도부장을 맡겠다고 나서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야 마땅합니다.

학생들의 무차별적인 교사폭행의 잘못된 교권 침해에 대해서는 학부모에 대한 고소·고발까지 포함하여 엄중한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학교폭력의 문제가 비단 영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통감해야 할 사회적인 책임인데도 일부 언론 등에서는 영주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하여서 마치 영주가 학교폭력의 온상인 양 사실 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만 확대 재생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학교폭력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힘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꽃다운 나이로 하늘에 간 우리 어린 친구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2012년 5월 11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황상조 의원(경산)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 촉구>>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경산 출신 황상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점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3일, 경북도와 경산시는 국토해양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대규모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건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국비 1,367억
원을 포함, 총사업비 2,278억원을 들여서 1호선 안심역에서
경산 하양역까지 8.77km를 연장 설치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도시철도 연장 주장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미
2008년도에도 경북도와 경산시가 국토해양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신청하였습시다만 2009년 당시 KDI에서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에 비용편익분석에서 0.58로 나와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바가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3년여 만에 다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는 것은 이제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로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경산은 2010년 수단통행발생량 기준으로 전체 통행량 중 대구시와의 통행이 약 37%에 이르고, 경산권역의 12개 대학 12만여 명의 학생 중 57.3%가 대구에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와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구와의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한 지하철 연장은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하양읍과 와촌면 일대에 391만㎡ 규모에 1조원의 사업비로 2020년까지 경산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추진되고 건설기계 부품단지 조성, 첨단메디컬 섬유소재 개발사업 등이 이루어지면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영천시 금호읍·청통면 일원에 영천 경마공원 조성, 경산 4산업단지 조성계획, 무학택지개발사업 계획 등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의 경제성은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은 하나의 생활권인 대구 시민과 경산시민들이 바라는 숙원사업의 하나로 12만여 명의 대학생과 교직원 및 1,600여 제조업체 2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출퇴근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역 경제도시권화, 경산의 대학도시 역량강화,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여 동반성장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오는 10월경 연장 개통하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의

사월역에서 경산 영남대 간 구간 3.3km 연장에 무려 20년이 소요되었다는 점입니다. 2005년 경북도, 대구시, 경산시가 건설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번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성공적인 경산 하양 연장을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경상북도의 주도적 역할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에서는 도시철도선 연장 추진이 지역발전의 절대적인 기폭제로 정확히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구·경북의 상생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상호간 긴밀한 이해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 2호선을 연계한 순환선의 구축은 물론, 필요하다면 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추진방안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경상북도 중심으로 지역의 경제계, 정치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적 과정에 절대적인 협력과 동참을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추재천 의원(교육3) ◎

<<주 5일제 수업에 따른 지역사회 토요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지원촉구>>

안녕하십니까? 김천·상주시, 고령·성주·칠곡군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추재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금년 3월 새 학기부터 시행된 주 5일 수업제가 본래의 교육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제대로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전면 자율 시행된 주 5일 수업제가 두 달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창의성과 인성을 중요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큰 흐름에 부응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주 5일 수업제는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5일 수업제를 시작한 지 두 달이 되는 현재 도내 학생의 40.9%인 13만 6,800여 명이 토요학습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참여율은 점차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경북의 경우에 전체 참여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참가율에도 불구하고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해 여러 쟁점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 5일 수업제 시행으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최대한 억제하고 경상북도내 각 급 학교에서 주 5일 수업제가 제대로 정착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을 충족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각 기초자치단체와 지역 사회 등 각 주체들이 아이들의 건전한 창의활동을 적극적으로 책임지려는 자세가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상북도에 가칭 경상북도 주 5일 수업제 지원 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상북도와 지자체 간,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 간, 그 외 지역사회 기관 등 범사회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지역사회 토요학습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책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 5일 수업을 통한 종전의 학습 또는 공부에 대해 획기적으로 사고를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공부라는 것이 학교에서 교과지식을 배우고 분석·응용하는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실제 경험을 통해 확인

하고 다양한 예술과 체육활동을 통해 정서적 능력을 함양하는 지·덕·체가 고르게 발달한 전인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방과 후 학교 보충 수업이 학교 안에서 진행된다면 온전한 제도의 정착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토요학습프로그램이 토요일 수업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는 오히려 퇴보하고 말 것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대한 이러한 사고의 전환이 확산되면 주말에 학생들이 학원으로 내몰려질 이유도 없고, 불법 주말반 편성으로 인한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 기관들이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시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셋째, 주 5일 수업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을 위해 핵심 과제는 많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토요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토요학습프로그램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요소는 콘텐츠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이

알차면 학생들은 저절로 몰려오기 마련입니다. 콘텐츠가 체육, 취미와 같은 몇몇 분야에 한정되다 보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기 마련이고, 결국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학원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프로그램은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꾸며져야 합니다.

끝으로 주 5일 수업제에서 제공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배려와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주 5일 수업제의 전면적 시행은 지역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일에 지역사회가 스스로 책임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 아이들은 우리가 함께 기른다는 책임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용이 드는 학습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5일 수업제로 인해 사회 계층 간 교육적 경험에서 차이가 많아지게 되면 학교 교육에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주 5일 수업제의 정착을 위한 토요학습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데 또 하나의 학습스트레스가 가중

되지 않고 그 본래의 취지에 걸맞게 지·덕·체를 함양하는
전인교육의 산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이나 학생 자살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 5일 수업제에 우리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명호 의원(안동) ◎

<<신 재생에너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안동 출신 김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 지붕을
태양광발전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공지의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전력사정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최근 10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을 170%에 달했고, 지난해의
설비 예비율은 4.8%에 불과했습니다. 전력소비 급증으로 블랙
아웃 위기를 아슬아슬하게 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예고 없는 정전으로 678만 건의 피해가 보고되었고, 기업 피해
액수만 2,000억원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원전 의존율은 낮추고 탄소배출은 억제하면서
부족한 전기를 확충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태양광 발전이 가장 유용한 대책이라고 확신
합니다.

최근 경상북도와 광주광역시, 인천시교육청, 창원시 등지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구상을 잇달아 내 놓았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014년까지 건물 1만여 채의 옥상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증폭되는 데는 후쿠시마 이후 제기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금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 에너지 의무할당제, 그리고 그로 인한 전기료 인상 전망 등이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국회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될 이른바 탄소배출권거래제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더 크게 신장시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우 교육감님.

본 의원은 경북도내 약 850여 개 공립 초·중등학교의 옥상 지붕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교육청은 학교 옥상지붕을 임대하고 사업자는 약정기간 동안 시설투자와 유지관리를 맡아 수익을 창출하여 교육청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소위 민간투자방식입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경북교육청 산하 공립 초·중등학교 전체의 옥상 면적은 139만 1,000㎡입니다. 이 중에서 태양광 시설을 할 수 있는 면적을 약 60% 정도로 낮춰 잡더라도 83만 4,600㎡가 됩니다.

이 공간이면 62MW급 발전시설이 가능한데 연간 전기생산량은 7만 9,205MW입니다.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317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일반가정용 주택 2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예천군민이 1년 동안 쓰고도 남는 양입니다. 안동에 있는 임하댐을 하나 더 건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3만 5,700여 톤을 감축하는 효과를 냅니다. 소나무 1,283만 4,000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북교육청은 매년 20억원 이상의 임대수입을 15년 동안 보장받게 됩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수명이 최하 25년 이상이므로 임대약정 기간을 15년으로 할 경우 기부채납 후 적어도 10년 동안 엄청난 금액을 교육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학생들에게는 태양광발전 설비 자체가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멋진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충분히 검토하시어 국가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이왕이면 타 시·도의 전범이 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관용 지사님께서도 다시 한번 숙고하시어 이 분야에 대한 경북도의 기존 방침도 진일보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육감님과 지사님의 해안과 깊은 관심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 : 20건(원안가결 14, 수정가결 6)
- 결의안 : 1건(원안가결)

■ 조 례 안

-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소속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8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심사
결과를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제4항을 삭제한다.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제6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 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연구활동기간은 연구활동계획이 승인된 날로부터 다음연도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위원회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운영과 그에 속한 연구단체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총괄사무는 입법정책관이 담당한다.

동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 8 조(연구단체) ① <생략> ②연구단체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u>10명 내외로</u> 구성하되 각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③ <생략>	제 8 조(연구단체) ① <생략> ②.....<u>10명 이상으로</u>..... ③ <생략>	다수의 의원에게 의원연구단체 활동 기회 제공, 효율적 운영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생략> ②위원회는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구단체에 <u>심사결과를</u>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① <생략> ②.....<u>심사결과를</u>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심사결과 통보시한을 정해 다음연도 연구활동 지원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③ <생략> ④외부전문가는 연구주제와 관련된 교수와 연구원 등을 지역에 있는 대학교와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⑤제4항에 따라 선정된 외부 전문가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단,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13조(연구단체 운영) ①~③ <생략> ④ < 삭제 >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⑤외부전문가는 해당 연구단체와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외부전문가 위촉 절차 간소화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의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북도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분권”이란 국가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주민참여의 실현을 통해 지역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책무)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는 내실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 4 조(추진계획)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방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5조제1항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도민참여 확대 방안
4.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개발
5. 그 밖에 지방분권 추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정책과제의 추진 등) ①도는 지방분권 추진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국가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 6 조(지방분권협의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의 지방분권 추진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지방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지방분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7 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지방분권 촉진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
3. 지방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4. 그 밖에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협의회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9 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①도지사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경우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지방분권 협의회 위원 수당 및 수용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지방분권 협의회 구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						
	소 계(a)						
세출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수당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 지방분권협의회 수용비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소 계(b)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 총 비용(a-b)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 분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비	일반회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특별회계						
	기 금						
시·군비							
민 간							
기 타							
합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5. 부대의견 : 없음

6. 작성자 : 정책기획관실 손영글(950-2825)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수당 : 30명×200천원×5회 = 30,000천원(1년)

○ 지방분권협의회 일반수용비 : 2,000천원× 5회 = 10,000천원(1년)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각 호 이외의 부분 중 “4,989”를 “4,991”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15”를 “1,917”로 한다.

별표 2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율	1% 이내	9% 이내	29% 이내	31% 이내	30% 이상

별표 3 중 합계란 “4,989”를 “4,991”로, 일반직 소계란 “1,429”를 “1,461”로, 일반직 5급 이하란 “1,339”를 “1,371”로, 기능직 계란 “323”을 “293”으로 한다.

별표 4 합계란 중 계란 “20”을 “22”로, 내역란 “5급 이하 16”을 “5급 이하 18”로 하고, 환경특별관리단란 다음에 일자리경제 본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자리경제본부	2	일반직 : 5급이하 2	2013. 6. 30	
---------	---	--------------	-------------	--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수에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수가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호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법인의 경영평가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 체제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와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 제 77조의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제32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자·출연·보조한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의 경영평가”라 함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또는 법인의 경영 목표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과 고객서비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3. “수시평가”라 함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4. “경영성과계약”이라 함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경영목표와 관련하여 도지사와 기관장이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 3 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출자·출연기관 또는 법인(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경영평가

제 4 조(경영평가 및 대상 공공기관) ①경영평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한다. 다만 출자·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해에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
2. 도가 해당 기관 예산의 2분의 1이상을 보조하고 있는 기관
3. 도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4분의 1 미만을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타 출자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경영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③정기평가는 매년마다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시평가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 5 조(경영평가 계획수립 및 통보) ①도지사는 당해 연도 경영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수시평가를 하고자하는 경우 미리 해당 출자·출연기관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6 조(경영실적 보고) ①제4조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경영실적 보고서를 다음연도 4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영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서
2. 예산서, 결산서
3.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4.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 7 조(경영평가의 위탁) ①도지사는 효율적인 경영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정관상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제13조에 따른 경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경영평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 ②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제 8 조(경영평가단 구성·운영) ①제7조에 따라 경영평가를
위탁 받은 기관은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경영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평가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평가단의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공공기관·단체
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
자문전문가
3. 지방공기업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
4.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 경영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경영평가단은 제13조의 경영평가위원회를 경유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⑤경영평가단은 해당 경영평가를 모두 마치는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⑥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9 조(경영평가 내용)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경영목표와 이에 따른 성과
2. 조직 및 업무의 능률성
3. 예산집행의 적절성 및 효율성
4. 공익성
5. 고객서비스

제 3 장 경영성과계약

제10조(경영성과계약) 기관장은 도지사와 매년 달성하여야 할 경영목표에 대한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①경영성과계약은 도지사와 기관장이 상호 합의한 후 그 합의한 내용을 기초로 체결한다.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결한 경영성과계약 이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4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해당 연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임기 만료일이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인 때에는 해당 임기 만료일을

말한다)까지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경상북도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 목표를 변경해야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2. 보수 등 계약내용에 관한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거나, 여건변화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서로 인정하는 경우

④제1항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에 5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
2. 기관장의 경영목표
3.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의 평가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12조(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①도지사는 제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기관장에 대한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는 제4조에 따른 경영평가와 병행하여 다음 연도 7월말까지 실시한다.

제 4 장 경영평가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심의·조정·의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의결한다.

1. 경영평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영평가 대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경영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4. 경영평가 위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경영평가에 따른 세부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3.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는 11인 이내로 한다.
 4. 그 밖의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 작성 및 관련 서류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제14조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업무의 본부·실·국장 등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의견제출 또는 회의참석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경영평가에 따른 조치 등

제21조(보고서 제출) ①제7조에 따른 위탁기관 및 제8조에 따른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 결과보고서 및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보고서를 매년 7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결과보고서를 심의·의결한 후 심의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위원장이 제출한 경영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결과에 따른 조치) ①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조언·권고할 수 있다.

1. 경영평가에 따른 포상 또는 벌칙
2. 경영평가에 따른 예산의 증감
3. 부진기관에 대한 경고조치 및 경영진단 실시
4. 사업의 중지 또는 사업변경
5. 조직의 폐지 또는 신설 권고
6. 그 밖의 위원회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②도지사는 경영평가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에 따라 기관장에 대해서 연봉조정, 인사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조치를 권고 받은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조치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3의 경영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결과 공개) 도지사는 경영평가 결과 조치계획을 포함한 경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도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의무불이행에 대한 벌칙) 도지사는 위원회의 경영평가에 대해 당해 기관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 경영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출자·출연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폐지규정) 「경상북도 산하기관·단체 경영혁신평가 등에 관한 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4월 27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영평가 위탁기관의 범위제한을 완화하고, 평가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분장 등을 고려할 때 경영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내용

- 안 제7조제1항의 “다만,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함.
- 안 제15조제2항의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함.
- 안 제18조제1항의 “업무담당”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7조제1항의 “다만, 도의 출자·출연기관은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 제15조제2항중 “정무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 제18조제1항중 “업무담당”을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이 유
제 7 조(경영평가의 위탁) ①..... <u>다만, 도의</u> <u>출자·출연기관은 제외</u> <u>한다.</u> 1~4 (생략) ② (생략)	제 7 조(경영평가의 위탁) ①..... (삭제) 1~4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경영평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위탁기관 범위제한 단서조항 삭제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위원장은 <u>정무부지사</u> 가 되고,..... ③ (생략) 1~4 (생략) ④ (생략)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제정안과 같음) ②위원장은 <u>행정부지사</u> 가 되고,..... ③ (제정안과 같음) 1~4 (제정안과 같음) ④ (제정안과 같음)	경영평가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분장 감안 수정
제18조(간사) ①, 간사는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u>업무담당</u> 이 된다. ② (생략)	제18조(간사) ①, 간사는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u>업무담당과장</u> 이 된다. ② (제정안과 같음)	경영평가 업무의 중요성 감 안 수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2. “세출”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세입”이란 도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 3 조 (작성대상)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이 곤란한 경우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작성방법 등) ①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 5 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도지사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 6 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①비용추계서는 의안 주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도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제 7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〇〇〇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 1. 재정수반요인
- 2. 비용추계의 전제
- 3. 비용추계의 결과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 분	세입						
	○						
	○						
	소 계(a)						
세출	○						
	○						
	소 계(b)						
□ 총 비용(a-b)							

4. 재원조달 방안

연 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 분	국 비						
	일반회계						
	〇〇특별회계						
	〇〇기금						
시·군비							
민 간							
기 타							
합 계							

5. 부대의견

6. 작성자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뒤 쪽)

작성요령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경상북도의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련 법령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
4. 재원조달 방안 :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6.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한다.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비용추계 항목별로 비용추계의 방법, 비용추계에 사용한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경상북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조제○항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 제시)

4. 작성자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16조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시설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효율적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과 협의할 수 있다.

제 4 조(지원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센터 운영계획과 예산, 서비스 개선 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계획수립 및 예산 지원)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2. 아동의 학습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3.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사업
 4.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5. 지역사회와의 협력·연계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의 사업운영비
 2. 센터의 기능보강사업비
 3. 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4. 센터 이용아동의 급식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 ③제2항의 예산 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 6 조(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사업 계획
2. 센터 사업의 예산 지원
3. 센터의 운영사업 평가

4. 복지자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 7 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2. 아동복지 관련 전문가
3. 아동복지와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경상북도교육청 관련 공무원
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 8 조(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 중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정기회의를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 ①도지사는 보조금에 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경북도내 지역아동센터는 231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지역 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학습 및 예체능교육, 문화·체험활동, 급식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음.
- 2012년 기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 및 인건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부담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를 부담하고 있음. 이에 따라 231개소 모두에 기본운영비를 지원하고, 특수목적형·거점형 40개소와 토요운영 100개소는 기본운영비 외에 추가 지원하여, 총 10,676백만원 중 국비 5,338백만원, 도비 1,602백만원, 시군비 3,736백만원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2012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예산(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 산	국 비	도 비	시군비	비 고
합 계	10,676	5,338	1,602	3,736	
기본운영비	9,852	9,926	1,478	3,448	231개소
특수목적형·거점형	424	212	64	148	40개소
토요운영	400	200	60	140	100개소

유 형 별		정 원	상근 종사자	2012년 지원기준액(月)	비 고
소규모형(도시)		19인 이하	2	3,550천원	- 이용아동수 및 상근종 사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9인 미만 시설 별도규정 ※ 농촌형 30인 이상은 도시형 +20만원
표준형	읍면	19인 이하	2	3,750천원	
	도시	29인 이하	2		
확대형	읍면	29인 이하	2	3,950천원	
	도시, 읍면	30인 이상	3	4,650천원	

※ 9인 미만시설 : 215만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지원시설, 지원 금액을 추가하여 지원 가능

* 도시지역 9인 이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도시
지역에서 9인 이하시설을 운영할 때 소규모형(도시) 운영비 기준의
6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지원결정(읍면지역 포함)

- 지역아동센터 지원예산에서 경북도의 부담비율은 15%에
해당됨. 지역아동센터의 수가 증가할 경우 예산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담비율을 고려할 때, 급격한 예산 증가에
따른 부담은 미미한 수준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 유지를 위하여 구강보건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강보건사업”이라 함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의치보철 및 불소 도포·치석 제거 등을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노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민의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전문 인력의 양성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 4 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의 의료급여수급권자
3.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그 밖에 의치보철이 필요한 사람 중 경제적 사정 등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 5 조(사업 및 예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노인의 의치 보철, 불소 도포, 치아 세정, 치석 제거 사업
3. 노인 장애인의 구강관리 사업(의치보철사업 후 사후관리 등)
4. 구강보건실 운영
5. 구강 검진 및 개별 구강보건교육
6.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기능의 회복·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6 조(구강보건사업 세부계획 수립) ①도지사는 「구강보건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구강보건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보건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
2. 구강보건사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
3.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구강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5. 의치보철과 불소 도포 및 치석 제거 등의 관리요령 및 사후관리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하여 연령, 대상,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7 조(사후관리)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세부계획 등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자료 요청) ①도지사는 세부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와 관련 기관 등에 협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협조) ①도지사는 구강보건사업 지원을 위해 해당 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의료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 구강보건사업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2012년 기준 구강보건사업 대상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 1,299명 (2,857,800천원),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6,522명 (169,572천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사업 650명(65,000천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2개소(18,076천원)로 전체 예산은 총 3,110,44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구강보건사업 실적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계획
노인의치보철사업	1,993명	1,548명	1,767명	1,299명
노인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1,707명	4,238명	8,934명	6,522명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사업	723명	723명	372명	650명
구강보건실 설치	2개소 (초등학교)	1개소 (구강보건실1)	5개소 (구강보건실 1개소, 양치교실 4개소)	2개소 (양치교실)

- 이에 따른 예산 편성 현황을 보면, 노인 의치보철 사업 2,857,800천원, 노인 불소 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169,572천원, 노인장애인 구강관리 사업 65,000천원, 구강보건실 설치 사업 18,076천원으로 전체 예산은 총 3,110,44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최근 3년간 구강보건사업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고
합 계	소 계	2,448,582	3,701,216	3,575,836	3,110,448	100%
	기 금	1,224,291	1,850,608	1,787,918	1,555,224	50%
	도 비	367,288	555,182	536,375	466,565	15%
	시군비	857,003	1,295,426	1,251,543	1,088,659	35%
노인의치 보철사업	소 계	2,251,606	3,338,728	3,148,468	2,857,800	
	기 금	1,125,803	1,669,364	1,574,234	1,428,900	
	도 비	337,741	500,809	472,270	428,670	
	시군비	788,062	1,168,555	1,101,964	1,000,230	
노인 불소도포 및 스케일링 사업	소 계	44,356	110,188	168,168	169,572	
	기 금	22,178	55,094	84,084	84,786	
	도 비	6,654	16,528	25,225	25,434	
	시군비	15,524	38,566	58,859	59,352	
노인 장애인 구강관리 사업	소 계	72,300	72,300	58,400	65,000	
	기 금	36,150	36,150	29,200	32,500	
	도 비	10,845	10,845	8,760	9,750	
	시군비	25,305	25,305	20,440	22,750	
구강보건실 설치	소 계	80,320	180,000	200,800	18,076	
	기 금	40,160	90,000	100,400	9,038	
	도 비	12,048	27,000	30,120	2,711	
	시군비	28,112	63,000	70,280	6,327	

- 최근 3년간 구강보건사업의 예산은 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편성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도비는 466,565천원으로 나타남. 구강보건사업은 전체예산 중 기금지원 부분은 시도별 목표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하여 기금(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게 됨으로, 조례에 의한 사업량을 확대할 경우 확대된 사업량 만큼 도비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는 관련부서에서 도민의 구강보건 사업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도의 예산부담 정도를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경우 조례제정에 따른 신규 재정부담은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③ 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
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 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

④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제 5 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 제목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를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3 조(상당계급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5조제3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별정직 직위 상당계급 정원과 현원간의 불일치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 5 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절차, 임용구비서류 및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 〈신설〉 ②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그러하지 아니한다.</u> 1. <u>비서관 및 비서</u> 2. <u>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경우(예 : 초빙하는 경우)</u> 3. <u>〈신 설〉</u>	<u>제 5 조(임용절차 등) ①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다만, 5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시장·군수의 요구에 따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u> <u>②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 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u> <u>③별정직공무원 임용은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의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에 의한 경쟁이 아닌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u> <u>1. 비서관 또는 비서를 임용하는 경우</u> <u>2. 외국인을 임용하는 경우. 다만, 초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u> <u>3. 정원관리기관내 별정직공무원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직위로 재임용하는 경우. 이 경우 근무성적 및 해당연도 일반직공무원 해당 계급별 평균 승진 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4. <신 설>	4.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변경 등으로 <u>별정직공무원을 직무 분야의 변경 없이 동일한 상당계급 으로 재임용하는 경우</u>
④ <신 설>	④ <u>별정직공무원을 임용함에 있어서 임 용자격기준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 성 등을 필기시험, 실기시험 또는 면접 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시험의 방법, 임용시험의 절차 등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 제45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u>
제 5 조의2조 <신 설>	제 5 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에 필 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직권면직)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경상북도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4. (생략) 제11조(병역·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휴직을 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해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2.~4. (현행과 같음) 제11조(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른 인사관리) ①별정직공무원이 법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제5호에 따라 휴직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해당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출산휴가일로 부터 후임자를 보충한 경우, 해당 휴가기간을 후임자의 임용기간에 포함한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등·하교, 놀이, 오락 등 일상 생활에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3. “어린이 안전관리”란 제2호의 안전관리 중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어린이 안전 교육”이란 교통·화재·전기·가스 안전, 실종·유괴의 예방·방지, 약물오남용 및 성폭력 예방, 지진·태풍·홍수 등 재난대비를 위한 안전 교육을 말한다.
5.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 3 조 (도지사의 책무)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와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

제 4 조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도지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상북도
 안전관리 계획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의 목표와 기본방향
2. 어린이 안전관리의 주요 시책과 추진과제
3.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부문(분야)별, 사업별 추진 계획
4.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어린이 안전 교육) 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교통, 화재, 가스, 전기 안전 교육
 2. 실종과 유괴 예방·방지 교육
 3. 약물오남용 예방 및 심폐소생술 교육
 4. 태풍, 홍수, 지진 발생시 대처 요령 교육
 5. 성폭력 예방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 6 조(어린이 안전 민간단체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활동)과 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7 조(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안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에 관한 사항
5.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을 위한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구성 및 임기)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안전관련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의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2. 어린이 실종·유괴의 예방 및 약물오남용 관련 전문가
3. 어린이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관련 전문가
4. 시·군의 어린이 안전 관련 담당 공무원
5.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어린이 안전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 그 밖에 안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④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위원의 경우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제 9 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간사)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수당과 여비 등)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어린이 안전 조례안」 제4조와 제5조, 제6조, 제12조에 따른 소요 예산 추계

2. 비용추계

- 어린이 안전 조례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현재는 구체적인 사업수행이나 예산 편성이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조례 안에서 규정 한대로 직접 부담하는 예산만을 추계하면 총 34,500천원으로,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수립 2,000천원, 어린이 안전교육 14,400천원, 민간단체 지원 12,500천원, 수당 및 여비 5,600천원.

어린이 안전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비고
소 계	34,500	소 계	34,500	산출근거	
일반회계 (도비)	34,500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2,000	- 책자유인 200부×9,000원=1,800,000원 - CD 제작 100매×2,000원=200,000원	안 제4조
		어린이 안전교육	14,400	- 홍보전단지 제작 12회×800,000원=9,600,000원 - 캠페인 참여자 실비 보상 12회×400,000원=4,800,000원	안 제5조
		민간단체지원	12,500	- 민간단체 지원 12,500천원	안 제6조
		수당·여비	5,600	- 수당 및 여비 140,000(수당 70천원 + 여비 70천원)×20인×2회=5,600,000원	안 제12조

※ 작성부서 : 안전정책과(053-950-3720)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 성공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인류공영에 기여함은 물론, 새마을운동 종주도로
서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
(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립·운영) ①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2.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3.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4. 현지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5.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교육
6.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7.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
8.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 5 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공익법인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규정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회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임원) ①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3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대표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③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대표이사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 7 조(이사회)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 8 조(출연금 교부)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 9 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 재단의 사업 수익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지원) ①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새마을세계화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기관이 부담한다.

②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재단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 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

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확인·검사) ①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서류와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의 대부)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제 안 자 : 행정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본 제정조례안은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재단의 사업의 정리, 적용법령, 조문 표현 정비 등을 수정함.

2. 주요 내용

- 안 제3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함.
 1.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2.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3.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4. 현지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5.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교육
 6.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7.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
 8.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안 제5조제1항중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민법」 제43조”로 함.

- 안 제11조제2항중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를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함.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함.
 1.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
 2.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
 3.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
 4. 현지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
 5.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교육
 6.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
 7.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
 8.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국내외 홍보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안 제5조제1항중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민법」 제43조”로 함.
- 안 제11조제2항중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를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로 함.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 3 조(재단의 사업) <생략> <u>1. 새마을 세계화 중·장기적 전략수립 및 국제협력모델 정립</u> <u>2. 새마을운동 연구, 이론 정립 및 전문인력 확보 등 학술적 기반 조성 사업</u> <u>3. 새마을봉사단 파견 및 시범마을 조성사업</u> <u>4. 외국인 지도자 초청 연수 및 글로벌 새마을 포럼 운영</u> <u>6. 수요조사, 프로젝트사업 시행·평가 등 제반 해외 새마을 사업</u> <u>7. 민·관 협력사업 및 국제 기구 지원사업</u> <u>8.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u>	제 3 조(재단의 사업) <제정안과 같음> <u>1.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중·장기적 계획 수립</u> <u>2. 새마을운동에 관한 연구 및 포럼 운영 등 학술적 기반 조성</u> <u>3. 새마을봉사단 선발 파견 및 해외 시범마을 조성</u> <u>4. 현지 거버넌스 구축 및 국제협력 모델 정립</u> <u>5. 외국인 새마을지도자 양성 및 전문인력 교육</u> <u>6. 새마을세계화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결과 평가</u> <u>7. 새마을세계화 사업에 관한 민·관 협력</u> <u>8. 새마을세계화 사업의 국내외 홍보</u> <u>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u>	재단수행 사업 내용의 명확한 정리
제 5 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생략> ② <생략>	제 5 조(정관) ①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3조,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4.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민법」 제43조의 재단법인 규정 준용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이유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 지원) ① <생략> ②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의 위탁 및 운영 지원) ① <제정안과 같음> ②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 재단과 관계있는 기관·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의 조문 정비

비 용 추 계 서

■ 단계별 소요예산 추계

- 1단계('12~'13년) : 연간 50억원(운영비 10억원 / 사업비 40억원)
- 2단계('14~'16년) : 연간 65억원(운영비 15억원 / 사업비 50억원)
- 3단계('17~'21년) : 연간 78억원(운영비 18억원 / 사업비 60억원)

(단위 : 백만원)

구분/단계별		1단계 ('12 ~ '13년)	2단계 ('14 ~ '16년)	3단계 ('17 ~ '21년)
운영비	인건비	430	690	950
	해외체류비 및 출장비	120	220	280
	일반관리비	200	250	300
	기타(예비비·행사비 등)	250	340	270
	소 계	1,000	1,500	1,800
사업비	직접사업비	3,400	4,400	5,500
	새마을아카데미지원	600	600	500
	소 계	4,000	5,000	6,000
총 계		5,000	6,500	7,800

■ 직접사업비 단계별 증액

- 재단의 연간사업비(1단계 기준) : 40억원
 - 1단계는 현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재단을 통해 수행
- ☞ 새마을세계화 사업비 관련, 도비 지원액 증전 대비 큰 규모의 변동은 없음.
- ※ '11년 새마을세계화 관련 도비지원액 30억원 → '12 ~ '13년도 재단 사업비 40억원 정도(*이후 단계별 10억원씩 증액)

- 연간운영비(1단계 기준) : 10억원(*설립초 연도 5억원 정도 소요)
- ☞ 재단 설립에 따른 신규 예산소요

■ 2012년 재원 및 소요예산

- 재 원 : 출연금(도, 시군, 민간단체, 기업 등), 수탁료, 기타
- 소요예산 : 35억원(법인설립출연금 30억, 재단운영비 5억원)
 - 운영비 : 인건비 1억원, 시설 및 자산취득 3, 일반운영 및 사업비 1
 - 최소인원 6명 채용, 인건비 1억원 소요(*도파견 2명 별도)
 - ※ 평년(3년차 이후) 재단운영비 15억원 정도 소요 예상

■ 향후 재원 확충방안

- 출연금 확보('13까지 100억원) 이자 확보 : 4억원
 - 도, 시·군, 민간단체, 기업 등의 해외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
- 도, 시군 및 기관단체 등 수탁사업 운영비 수입 : 2억원
 - 각종 수탁사업 사업비의 5% 수수료 수입(운영비 확보)
 - 지자체, 농협, 유관기관, 기업체 등의 사업대행 수탁 가능
- 기타 수익사업을 통한 운영비 수입 : 5천만원(*점진적 확대)
 - 국내 새마을해외사업컨설팅, 행사대행, 사업위탁관리 등
- ※ **단계별 재단법인 운영 자립화 계획 : 별첨**

- **향후 5년(2016년)이내 재단운영 재원 다각화를 통해 70% 까지 운영 자립 강화 추진**

단계별(2012 ~ 2016) 재단법인 운영 자립화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운영비 지원 (도)	출연금				수탁사업 (대행수수료)			수익사업				
				소계	도	시·군	농협 단체 기업	소계	도	농협 단체 기업	소계	컨설팅	행사 대행	위탁 관리	기타
총계	도비	8,500	2,500	10,000	6,000	1,500	2,500								
	재단 확보	3,703		2,553	990	248	1,315	950	830	120	200	80	40	80	-
2012	계	3,553													
	도비	3,500	500	5,250	3,000	750	1,500								
	재단 확보	53		53	30	8	15								
2013	계	4,150													
	도비	3,500	500	4,750	3,000	750	1,000								
	재단 확보	650		400	240	60	100	200	170	30	50	20	10	20	
2014	계	1,500													
	도비	500	500	-											
	재단 확보	1,000		700	240	60	400	250	220	30	50	20	10	20	
2015	계	1,500													
	도비	500	500	-											
	재단 확보	1,000		700	240	60	400	250	220	30	50	20	10	20	
2016	계	1,500													
	도비	500	500	-											
	재단 확보	1,000		700	240	60	400	250	220	30	50	20	10	20	

◆ 운영비 소요추계(대경연구원 용역참조)

- 제1단계('12~'13년) : 연간 10억원
- 제2단계('14~'16년) : 연간 15억원
- 제3단계('17~'21년) : 연간 18억원

※ 운영비 관련 재단확보액(수입)은 출연금에 대한 이자(4%) 및 수탁사업중 직접사업비의 5% 정도를 수입으로 산정함(*단, 2012년도 출연금 이자수입은 4/4분기만 적용).

☞ 직접사업 : 해외시범마을조성, 현지거버넌스구축, 외국인새마을지도자 양성, 기관단체(기업체, NGO)등과의 협력사업, 기타 UN등 국제기구 협력사업, 홍보,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 재단운영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출연금(기본재산 100억원) 외에도 보다 많은 기업들이 CSR 차원에서 기부 등을 통해 재단 운영에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함.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운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의 설치와 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조성) ①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체육단체의 출연금
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4.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체육진흥에 필

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제 3 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기금의 여유자금은 「경상북도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1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 4 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에 사용한다.

1. 경상북도체육회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 진흥사업
3. 우수선수 육성사업
4. 도민체육대회 개최
5. 전국체육대회 참가
6. 그 밖에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기금은 연간 이자수입액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다.

제 5 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

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 관련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체육 및 기금관계 공무원

2. 체육 관련 단체 임·직원

3. 체육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상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8 조(기금의 운용계획) ①도지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9 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회계 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일반회계의 수입 및 지출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도지사는 매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경상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 운용조례」에 따라 조성 및 집행된 체육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도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2. “생활체육 단체”란 생활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체육동호인 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을 말한다.

제 3 조(생활체육의 진흥) ①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도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육성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단체와 체육동호인 조직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 4 조(생활체육 진흥 사업)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범도민 체육생활화운동 전개
2.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3. 생활체육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지원
4.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육성·지원
5. 체육동호인 조직 활동의 육성·지원
6. 생활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5 조(예산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생활체육회는 도지사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6 조(지도·감독) 도지사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은 생활체육회와 생활체육 단체에 대하여 사업장과 보조금 관련 서류 및 재산 등에 대해 지도·

감독할 수 있다.

제 7 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2년 4월 30일

제안자 : 문화환경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제3조제2항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별 특성도 포함하여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를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데, 타당한 의견으로 판단되어 조례안에 반영
- 조례안 제5조제2항중 “경상북도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이라는 표현은 같은조 제1항에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생활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경상북도 생활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와 동일하게 단체가 아닌 기관으로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른 조항에서도 모두 도지사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도지사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은”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함.

2. 주요골자

- 안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안 제3조제2항 중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를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로 함.
- 안 제5조제2항 중 『경상북도로부터』를 『도지사로부터』로 함.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 3 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략) ②도지사는 지역, 연령, 직업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예산 지원) ① (생략) ②생활체육회는 <u>경상북도로부터</u> 예산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3 조(생활체육의 진흥) ① (생략) ②도지사는 지역, 연령, 직업, 성별 등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예산 지원) ① (생략) ②생활체육회는 <u>도지사로부터</u> 예산을 지원 받은 생활체육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 요인

「경상북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예산 추계

2. 비용 추계

- 경상북도의 생활체육 이용자 수는 매년 약 120만명으로 추정되며, 2011년 말 기준으로 생활체육 관련 단체 57개(23개 시군 생활체육회, 34개 도 종목별 연합회)와 생활체육동호인 클럽 87개 종목 5,089개 클럽에 192,46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경북도의 2012년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총 10,095백만원으로 국비 3,021백만원(29.9%), 도비 2,715백만원(26.9%), 시군비 4,359백만원(43.2%)이 편성되어 있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비 고
합 계	5,815	7,170	8,680	10,095	
국 비	2,016	1,995	2,497	3,021	
도 비	1,314	2,256	2,587	2,715	
시군비	2,485	2,919	3,596	4,359	

- 국비와 도비 부담은 각각 30% 정도 수준에서 매칭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40%는 시군의 특성을 반영하여 예산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신규 재정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생활체육 동호인 클럽 현황(2012. 2. 1 현재)

(단위 : 개, 명)

종 목	계		지 역		직 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합 계	5,089	192,467	4,852	169,109	237	23,358
1 검도	93	3,153	88	3,093	5	60
2 경당	1	32	1	32	0	0
3 게이트볼	343	8,300	340	8,232	3	68
4 골프	27	2,003	27	2,003	0	0
5 궁도	22	506	21	447	1	59
6 그라운드골프	57	2,670	57	2,670	0	0
7 낚시	44	1,069	44	1,069	0	0
8 농구	47	982	46	981	1	1
9 단전호흡	6	185	6	185	0	0
10 국학기공	90	2,706	90	2,706	0	0
11 당구	18	424	17	405	1	19
12 댄스스포츠	107	3,885	101	3,756	6	129
13 등산	43	3,331	43	3,331	0	0
14 라켓볼	9	406	9	406	0	0
15 레크리에이션	4	84	4	84	0	0
16 무에타이	15	507	15	507	0	0
17 배구	118	2,914	106	2,748	12	166
18 배드민턴	265	15,258	255	14,782	10	476
19 보디빌딩	87	6,754	85	6,640	2	114
20 복싱	44	1,085	43	1,077	1	8
21 볼링	214	5,990	207	5,814	7	176
22 사격	2	74	2	74	0	0
23 사이클	3	53	3	53	0	0
24 생활체조	338	10,417	331	10,137	7	280
25 소프트볼	1	52	1	52	0	0
26 수영	60	3,151	59	3,145	1	6
27 스케이팅/빙상	5	527	5	527	0	0
28 스쿼시	32	530	31	521	1	9
29 스키	13	797	13	797	0	0
30 스킨스쿠버	15	362	15	362	0	0

(단위 : 개, 명)

종 목		계		지 역		직 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31	승마	24	1,347	24	1,347	0	0
32	씨름	22	260	22	260	0	0
33	야구	237	5,764	208	5,066	29	698
34	에어로빅	178	5,429	174	5,032	4	397
35	역도	3	47	3	47	0	0
36	요가	38	2,081	38	2,081	0	0
37	요트	1	36	1	36	0	0
38	우슈/쿵후	14	264	14	264	0	0
39	윈드서핑	11	141	11	141	0	0
40	유도	20	461	20	461	0	0
41	육상/조깅/마라톤	24	1,359	22	1,236	2	123
42	자전거	31	1,453	31	1,453	0	0
43	전통무용	33	818	33	818	0	0
44	정구	67	2,424	67	2,424	0	0
45	족구	281	4,930	261	4,656	20	274
46	줄넘기	30	1,335	29	1,319	1	16
47	줄다리기	6	773	6	773	0	0
48	종합무술	13	241	13	241	0	0
49	철인3종	17	296	16	288	1	8
50	축구	662	19,099	631	17,776	31	1,323
51	카누	17	476	16	381	1	95
52	탁구	192	6,695	183	6,185	9	510
53	태권도	105	4,843	104	4,830	1	13
54	태극권	1	52	1	52	0	0
55	택 견	8	126	4	51	4	75
56	테니스	328	9,671	285	8,003	43	1,668
57	페러글라이딩	22	218	21	185	1	33
58	풋살	144	2,717	136	2,007	8	710
59	피구	1	135	1	135	0	0
60	합기도	75	2,747	69	2,328	6	419

(단위 : 개, 명)

종 목		계		지 역		직 장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클럽수	회원수
61	항공스포츠	3	175	2	110	1	65
62	핸드볼	8	282	8	282	0	0
63	행글라이딩	1	114	1	114	0	0
64	MTB	30	2,319	24	401	6	1,918
65	X-게임	3	324	1	271	2	53
66	인라인하키	1	134	0	0	1	134
67	레슬링	1	8	1	8	0	0
68	민속경기	21	502	21	502	0	0
69	전통무예	1	29	1	29	0	0
70	양궁	1	1	1	1	0	0
71	클라이밍	1	42	1	42	0	0
72	격투기	17	271	17	271	0	0
73	파크골프	51	1,282	51	1,282	0	0
74	경비행기	2	35	2	35	0	0
75	견기	2	213	2	213	0	0
76	법률대법	3	75	3	75	0	0
77	프리테니스	14	340	14	340	0	0
78	인라인스케이팅	34	1,751	32	744	2	1,007
79	펜싱	1	194	1	194	0	0
80	경호무술	2	77	2	77	0	0
81	건강달리기	60	14,066	55	13,741	5	325
82	국선도	2	144	2	144	0	0
83	바둑	21	707	21	707	0	0
84	모터스포츠	1	31	1	31	0	0
85	음악줄넘기	3	176	3	176	0	0
86	밸리댄스	5	279	5	279	0	0
87	기타	72	14,451	71	2,528	1	11,923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 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 3 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인한 도민의 건강과 주거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도지사는 효과적인 석면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수집·운반·보관·처리(이하 “철거 및 처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사항
2.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지원 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
3.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

4.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사업을 하는 경우
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6.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지원 범위)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2. 「주택법」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5조 제1호의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 7 조(사업비의 지원) ①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 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내용 및 기관별 재원 분담계획 등 구체적인 시행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 8 조(시장·군수의 의무)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철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받은 시장·군수는 시군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목적에 맞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도지사가 철거 및 처리 비용의 사용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 9 조(사업의 지도·감독)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추진상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8조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비용을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결과의 보고) 시장·군수는 당해연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밖에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상북도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경상북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예산추계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내 슬레이트 분포현황
 - 전국 건축물 683만동 중 슬레이트 건축물은 18.1%인 123만동으로 용도별로는 주거용 건축물이 대부분(88만동)
 - 전국 123만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중 194천동(15.7%)이 우리도에 분포

구 분	계(동)	주택	창고	공장	축사	시설	기타
전국	1,236,464	883,049	88,003	33,173	120,454	98,469	13,316
경북	194,021	143,784	11,460	3,223	21,555	10,544	3,455

-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
 - 194천동 × 동당 처리비용 200만원(2012년도 사업 기준) = 3,880억원
 - 현재 추진중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보조비율
 - ※ 동당 200만원 기준(국비 60,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80)
 - ➡ 도비 소요 액 : 582억원(소요 예산의 15%)

3. 비용추계의 결과

구분 \ 연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합계 (백만원)
세입	○ 슬레이트 처리지원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53	116,413
	소계(a)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53	116,413
세출	○ 슬레이트 처리지원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79	174,619
	소계(b)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60	17,479	174,619
□ 총 비용(a-b)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6	58,2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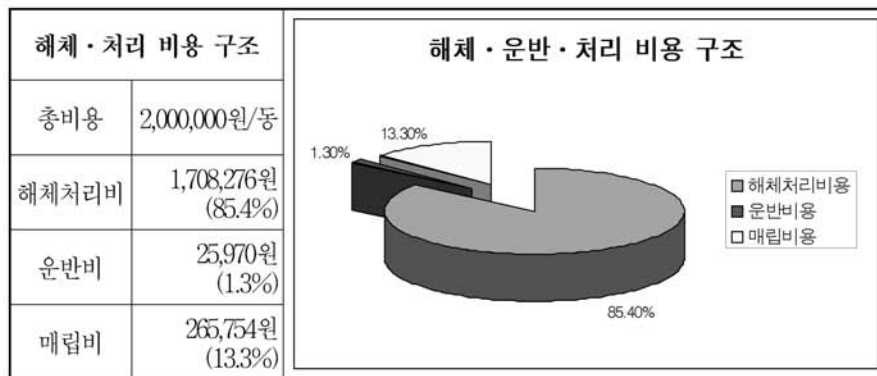
4. 재원조달 방안

구분 \ 연도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7차 년도	8차 년도	9차 년도	10차 년도	합계 (백만원)
국비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40	11,653	116,413
도비	일 반 회 계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6	58,206
	특 별 회 계											
	기금											
시·군비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0	5,826	58,206
민간		15,520	15,520	15,520	15,520	15,520	15,520	15,520	15,520	15,520	15,537	155,217
기타												
합계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00	38,842	388,042

5. 부대의견

- 자부담 과중으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을 기피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국비 지원 비율 상향 조정을 건의하고 예산 편성시 시·군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자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주변 지역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①“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2조제2호의 구역을 말한다.

②“친수구역”이란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킬로미터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③“친수구역 조성사업”이란 친수구역을 국가하천과 조화롭게 주거·상업·산업·문화·관광·레저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조성·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 3 조(기능)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한다.

1.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조성의 기본적인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3. 하천구역 및 친수구역 개발사업에 대한 시·군 상호간 조정
에 관한 사항
4. 친수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제출사항
5.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낙동강 살리기사업단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건설도시방재국장, 정책기획관이 된다.

③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2. 지역개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도의원
4.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원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 조(실무기획단 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
토하기 위하여 낙동강 연안개발 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
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실무기획단의 단장은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이 되고, 단원은
업무소관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기획단에 서기를 두며,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 9 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장·군수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
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업무소관 과·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
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토의 및 진행사항
2.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3. 기타 중요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경상
북도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2년 4월 27일

제안자 : 건설소방위원장

1. 수정이유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한 위촉대상에 도의원이 누락되어 있어 낙동강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 방지와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 활동에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신설코자 함.

2. 주요골자

- 안 제4조제3항제3호에 “도의원”을 신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경상북도 낙동강 연안개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3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도의원”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 4 조(구성) ①~③생략 1.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2. 지역개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u>〈신 설〉</u> <u>3.</u>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 4 조(구성) ①~③생략 1. 도시계획 또는 지역개발 관련학과 대학교수 2. 지역개발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 <u>3. 도의원</u> <u>4.</u> 그 밖의 지역개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를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실습소”를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로, “[별표 1]”를 “별표 1”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소장)”을 “(소장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로, “기자재의”를 “기자재”로, “산업사회의”를 “산업사회”로, “배양”을 “향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문계고등학교 교사에게 첨단기자재의”를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첨단 산업기자재”로, “배양”을 “향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실습소에는 실업과와 행정실을 두며 실과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 실장은 학교의 사무책임자가 겸임한다.”은 “실습소에는 운영부와 지원부를 두며 운영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업”을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행정실은” 은 “지원부는”으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무, 보안

제6조제3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소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소칙으로 정한다 .”를 “별도로 교육감이 정한다.”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별표 1 공동실습소 명칭 및 위치		
명칭	위치	설치연도	명칭	위치	설치연도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202번지	'91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농업계고등학교 농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안동시 하이마로 385	1991
경주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경주시 사정동 70번지	'95	경주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209	1995
경북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자동차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242번지	'97	경북자동차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자동차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일연로 93	1997
금오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전자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111번지	2000	금오공업고등학교부설경상북도공업계고등학교 전자기계공동실습소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0길 59	2000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전문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 1 조(목적) 경상북도 전문계고등학 교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 다)를 설치하여 경상북도 전문계고등 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 재의 조작 실습훈련을 통하여 자동 화·전문화 되어가는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둔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특 성화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를 설치 하여 경상북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첨단 기자재의 조작 및 실습을 통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적응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실습소의 명 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 2 조(명칭 및 위치) 공동실습소(이 하 “실습소”라 한다)…………… ……별표 1…………….
제 3 조(소장) ①·② (생 략) ③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u>유고시</u>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소장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제 5 조(기능)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 5 조(기능) …………….
1. <u>전문계고등학교 학생에게</u> 첨단 산업 <u>기자재</u> 의 조작실습을 통한 산업사회의 적응 능력 배양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 <u>기자재</u> …………… <u>산업사회</u> …………… <u>향상</u>
2. <u>전문계고등학교 교사에게</u> 첨단 <u>기자재</u> 의 조작실습을 통한 교수 능력 <u>배양</u>	2.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첨단 산업 <u>기자재</u> …………… <u>향상</u>

현행	개정안
제 6 조(하부조직 및 업무) ①실습소에는 실업과와 행정실을 두며 실과 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고, 행정실 실장은 학교의 사무책임자가 겸임한다. ②실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진행에 관한 사항 ③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복무, 보안 2. · 3. (생략) 4. 기타 일반사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제 9 조(소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칙으로 정한다.	제 6 조(하부조직 및 업무) ①..... 운영부와 지원부를 운영부장 지원부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②운영부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③지원부는 1. 복무, 보안 2.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제 9 조(운영세칙) 별도로 교육감이 정한다.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독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독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경상북도
교육청의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
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5조 및 35조에 따라 설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 3 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 4 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문화계 등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제 5 조(위원의 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6 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 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제 8 조(간사) ①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해당 도서관 소속 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경상북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에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와 위촉된 위원, 위원회 심의 안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소관 담당관·과		행정예산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과학직업교육과장 서한영
	담당 직위·성명	평생교육담당 지방사서사무관 김기환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사서주사 이현숙(053-603-3533)

[별 표]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제2조 관련)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삼국유사군위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5월 7일
제 출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조례의 제명과 조례안 내용의 일부를 수정함.

2. 주요골자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독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로 하며

안 제2조에

‘32조’를 ‘35조’로

‘둔다.’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안 제9조의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의 제명을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독립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2조

‘32조’를 ‘35조’로

‘둔다.’를 ‘두되, 명칭은 별표와 같다.’로

제9조

‘범위 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 표]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제2조 관련)

도서관운영위원회 명칭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삼국유사군위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명 :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u>도립도서관운영위원회</u>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2 조(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 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5조 및 <u>32조</u> 에 따라 설 치된 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 조(설치) <u>35</u> <u>두되, 명칭은</u> <u>별표와 같다.</u>
제 9 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한 위원에게는 「경상북도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 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u>범위에서</u>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9 조(수당 등) <u>범위에서</u>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평생학습관”을 “제 21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교육감”을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경상북도평생학습관운영에관한조례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평생학습관을 지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운영)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시설) 및 단체를 <u>교육감</u>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 3 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 4. (생 략) 5. 기타 평생학습에 관한 사항 제 4 조(지원)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 1 조(목적) 제21조 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 평생학습관 제 2 조(운영)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제 3 조(기능)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제 4 조(지원) 범위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도 서

〈가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울릉군	서면 남양1길 58	남양초등학교
	서면 남서길 52	울릉서중학교
	북면 천부길 95-3	천부초등학교
	북면 천부길 74-7	울릉북중학교
	북면 현포1길 38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

〈나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울릉읍 도동길 172	울릉초등학교
	울릉읍 도동길 151-19	울릉중학교
	울릉읍 울릉순환로 236	울릉고등학교
	울릉읍 봉래길 128-10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울릉읍 봉래길 128-3	저동초등학교
	울릉읍 저동길 54	우산중학교

2. 벽 지

〈가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로 777	소천초등학교남회룡분교장
울진군	서면 거리고길 71	삼근초등학교왕피분교장

〈나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2645	화북초등학교입석분교장
	화북면 중벌1길 1	화북초등학교용화분교장
문경시	산북면 창구길 9	산북초등학교창구분교장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1370	창수초등학교인천분교장
봉화군	소천면 두음길 567	소천초등학교두음분교장
울진군	서면 남회룡로 1464-8	삼근초등학교옥방분교장
	서면 회룡천1길 26-5	삼근초등학교광희분교장

〈다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15	죽장초등학교상옥분교장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60	기계중학교상옥분교장
경주시	산내면 거산제궁길 16	의곡초등학교일부분교장
안동시	길안면 송사시장길 104	길안초등학교길송분교장
	예안면 농암로 2384	월곡초등학교삼계분교장
영천시	자양면 별빛로 1183	자천초등학교보현분교장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	석산초등학교
의성군	안사면 안사풍천길 986	쌍호초등학교
	신평면 봉호로 2436	안평초등학교신평분교장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83-23	일월초등학교청북분교장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471	경상북도영덕학생야영장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587-4	가천초등학교무학분교장
봉화군	명호면 북곡길 21-7	명호초등학교북곡분교장
	물야면 두문로 370	물야초등학교수식분교장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울진군	북면 두천길 299	부구초등학교삼당분교장

〈라지역〉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75	죽장초등학교
	북구 죽장면 일광길 2	서포중학교
	북구 죽장면 일광길 2	서포고등학교
경주시	양남면 화림길 7-3	양남초등학교상계분교장
김천시	부항면 양지말길 6	부항초등학교
	부항면 사동3길 27-7	지례중학교부항분교장
	증산면 증산1로 29	증산초등학교
	증산면 증산1로 163	대덕중학교증산분교장
	어모면 작점로 817	능치초등학교
안동시	풍천면 신성장골길 1	신성초등학교
	녹전면 원매길 102-15	녹전초등학교원천분교장
	예안면 농암로 2055	안동중학교인계분교장
상주시	은척면 무릉2길 2	은척초등학교무릉분교장
	화북면 문장로 1682	화북중학교
	화북면 문장로 1803-12	화북초등학교
	화북면 문장로 1533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문경시	유곡불정로 154	점촌북초등학교
	문경읍 갈평길 34	용흥초등학교
	문경읍 청운로 23	문경초등학교
	문경읍 문경서중길 1	문경서중학교
	문경읍 여우목로 580	당포초등학교
	문경읍 향교길 20	경북관광고등학교
	가은읍 가은로 129	가은초등학교
	가은읍 가은로 205	가은중학교
	가은읍 가은로 205	가은고등학교
	가은읍 대야로 2508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가은읍 대야로 1871	가은초등학교희양분교장
	동로면 금촌로 1859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동로면 적성큰마길 11	동로중학교
	동로면 노은2길 4	동로초등학교
	마성면 동성길 80	동성초등학교

기 관 소 재 지		기 관 명
시·군·구	위 치	
문경시	마성면 외어1길 125	마성중학교
	농암면 중리길 1-5	농암초등학교청화분교장
	신기4길 15	신기초등학교
군위군	소보면 소보안계로 531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509	부남초등학교
	부남면 부남로 523	구천중학교
	부동면 부동로 1011-74	이전초등학교
	부동면 부동로 1011-28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장갈로 1445	일월초등학교청기분교장
	수비면 한티로 499	수비초등학교
	수비면 낙동정맥로 2417	수비중학교
	수비면 낙동정맥로 2417	수비고등학교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
	축산면 경정길 17	축산향초등학교경정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방지초등학교문명분교장
고령군	개진면 오사길 83	개진초등학교
	개진면 오사길 83	고령중학교개진분교장
	우곡면 객기나무길 374	우곡초등학교
	우곡면 우곡로 492-19	우곡중학교
	선남면 선노로 678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예천군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211	지방초등학교
	상리면 도효자로 1558	상리초등학교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424	서벽초등학교
	춘양면 춘양로 1490	춘양중학교서벽분교장
	소천면 소천로 1284	소천초등학교
	소천면 소천로 1237	소천중학교
	소천면 소천로 1237	소천고등학교
	소천면 풍애길 36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소천면 임기로 29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
	석포면 석포로1길 33	석포초등학교
	석포면 석포로 226-1	석포중학교
	재산면 재산로 514	재산초등학교
	재산면 동면로 34	재산중학교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도서 〈가지역〉				【별 표】 1. 도서 〈가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 관 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서면 남양리	남양초등학교	울릉군	서면 남양1길 58	남양초등학교
		서면 남서리	울릉서중학교		서면 남서길 52	울릉서중학교
		서면 태하리	남양초등학교태하분교장		삭 제	
		서면 태하리	울릉중학교태하분교장		삭 제	
		북면 천부리	천부초등학교		북면 천부길 95-3	천부초등학교
		북면 천부리	울릉북중학교		북면 천부길 74-7	울릉북중학교
		북면 현포리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		북면 현포1길 38	천부초등학교현포분교장
〈나지역〉				〈나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 관 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경상북도울릉교육청	울릉군	울릉읍 약수터길 40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
		울릉읍 도동리	울릉초등학교		울릉읍 도동길 172	울릉초등학교
		울릉읍 도동리	울릉중학교		울릉읍 도동길 151-19	울릉중학교
		울릉읍 도동리	울릉중합고등학교		울릉읍 울릉순환로 236	울릉고등학교
		울릉읍 저동리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울릉읍 봉래길 128-10	경상북도립울릉공공도서관
		울릉읍 저동리	저동초등학교		울릉읍 봉래길 128-3	저동초등학교
		울릉읍 저동리	우산중학교		울릉읍 저동길 54	우산중학교

현행			개정안		
2. 벽지 〈가지역〉			2. 벽지 〈가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남대리		삭 제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리	봉화군	소천면 남회룡로 777	소천초등학교 남회룡분교장
	울진군	서면 왕피리	울진군	서면 거리교길 71	삼근초등학교 왕피분교장
〈나지역〉			〈나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포항 학생야영장
경상북도	상주시	화북면 입석리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2645	화북초등학교 입석분교장
		화북면 중벌리		화북면 중벌1길 1	화북초등학교 용화분교장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창구리	문경시	산북면 창구길 9	산북초등학교 창구분교장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인천리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1370	창수초등학교 인천분교장
경상북도	봉화군	소천면 두음리	봉화군	소천면 두음길 567	소천초등학교 두음분교장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광회리	울진군	서면 남회룡로 1464-8	삼근초등학교 옥방분교장
		서면 광회리		서면 회룡천 1길 26-5	삼근초등학교 광회분교장
〈다지역〉			〈다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상옥리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15	죽장초등학교 상옥분교장
		북구 죽장면 상옥리		북구 죽장면 죽장로 1860	기계중학교 상옥분교장

현행				개정안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산내면 우라리	의곡초등학교 우라분교장		삭 제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의곡초등학교 일부분교장	경주시	산내면 거산제궁길 16	의곡초등학교 일부분교장
경상북도	안동시	길안면 송사리	길안초등학교 길송분교장	안동시	길안면 송사시장길 104	길안초등학교 길송분교장
		예안면 삼계리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예안면 농암로 2384	월곡초등학교 삼계분교장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송산리	산동초등학교 송백분교장		삭 제	
경상북도	영천시	자양면 보현리	자천초등학교 보현분교장	영천시	자양면 별빛로 1183	자천초등학교 보현분교장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석산리	석산초등학교	군위군	고로면 삼국유사로 1314	석산초등학교
경상북도	의성군	안사면 월소리	쌍호초등학교	의성군	안사면 안사풍천길 986	쌍호초등학교
		신평면 교안리	안평초등학교 신평분교장		신평면 봉호로 2436	안평초등학교 신평분교장
		다인면 달재리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다인면 자미로 492	경상북도의성 학생야영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당리	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재일로 1383-23	일월초등학교 청북분교장
경상북도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경상북도영덕 학생야영장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471	경상북도영덕 학생야영장
경상북도	성주군	금수면 무학리	가천초등학교 무학분교장	성주군	금수면 성주로 587-4	가천초등학교 무학분교장
경상북도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명호초등학교 북곡분교장	봉화군	명호면 북곡길 21-7	명호초등학교 북곡분교장
		물야면 수식리	물야초등학교 수식분교장		물야면 두문로 370	물야초등학교 수식분교장
		물야면 개단리	물야초등학교 개단분교장		삭 제	
		석포면 대현리	석포초등학교 대현분교장		삭 제	
		소천면 고선리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봉화 학생야영장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하당리	부구초등학교 삼당분교장	울진군	북면 두천길 299	부구초등학교 삼당분교장

현행				개정안		
〈라지역〉				〈라지역〉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명	시·군·구	기관소재지 위 치	기관명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장면 입암리	죽장초등학교	포항시	북구 죽장면 새마을로 3575	죽장초등학교
		북구 죽장면 입암리	죽장중학교		북구 죽장면 일광길 2	서포중학교
		북구 죽장면 입암리	죽장고등학교		북구 죽장면 일광길 2	서포고등학교
경상북도	경주시	양북면 숲전리	양북초등학교 숲전분교장	경주시	삭 제	양남초등학교 상계분교장
경상북도	김천시	양남면 상계리	양남초등학교 상계분교장		양남면 화림길 7-3	
		부항면 월곡리	부항초등학교		부항면 양지말길 6	부항초등학교
		부항면 사동리	지례중학교 부항분교장	김천시	부항면 사동3길 27-7	지례중학교 부항분교장
		증산면 유성리	증산초등학교		증산면 증산1로 29	증산초등학교
		증산면 동안리	대덕중학교 증산분교장		증산면 증산1로 163	대덕중학교 증산분교장
경상북도	안동시	어모면 능치리	능치초등학교	안동시	어모면 작점로 817	능치초등학교
		풍천면 신성리	신성초등학교		풍천면 신성장골길 1	신성초등학교
		녹전면 원천리	녹전초등학교 원천분교장	상주시	녹전면 원매길 102-15	녹전초등학교 원천분교장
경상북도	상주시	예안면 인계리	안동중학교 인계분교장		예안면 농암로 2055	안동중학교 인계분교장
		은척면 무릉리	은척초등학교 무릉분교장		은척면 무릉2길 2	은척초등학교 무릉분교장
		화서면 하송리	화령초등학교 송계분교장		삭 제	화북중학교
		화북면 용유리	화북중학교		화북면 문장로 1682	
		화북면 장암리	화북초등학교		화북면 문장로 1803-12	화북초등학교
경상북도	문경시	화북면 상오리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문경시	화북면 문장로 1533	경상북도상주 학생야영장
		유곡동	점촌북초등학교		유곡불정로 154	점촌북초등학교

현행				개정안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군위군	문경읍 갈평리	용흥초등학교		문경읍 갈평길 34	용흥초등학교
		문경읍 상리	문경초등학교		문경읍 청운로 23	문경초등학교
		문경읍 상리	문경서중학교		문경읍 문경서중길 1	문경서중학교
		문경읍 당포리	당포초등학교		문경읍 여우목로 580	당포초등학교
		문경읍 교촌리	문경관광고등학교		문경읍 향교길 20	경북관광고등학교
		가은읍 왕릉리	가은초등학교		가은읍 가은로 129	가은초등학교
		가은읍 왕릉리	가은중학교		가은읍 가은로 205	가은중학교
		가은읍 왕릉리	가은고등학교		가은읍 가은로 205	가은고등학교
		가은읍 왕릉리	경상북도립점촌공공도서관 가은분관		가은읍 대야로 2508	경상북도립점촌공공 도서관 가은분관
		가은읍 상괴리	가은초등학교 회양분교장		가은읍 대야로 1871	가은초등학교 회양분교장
		동로면 수평리	경상북도문경 학생아영장		동로면 급촌로 1859	경상북도문경 학생아영장
		동로면 적성리	동로중학교		동로면 적성큰마길 11	동로중학교
		동로면 노은리	동로초등학교		문경시 동로면 노은 2길 4	동로초등학교
		마성면 정리	동성초등학교 마성분교장		삭 제	
		마성면 오천리	동성초등학교		마성면 동성길 80	동성초등학교
		마성면 외어리	마성중학교		마성면 외어1길 125	마성중학교
		농암면 화산리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장		농암면 중리길 1-5	농암초등학교 청화분교장
		신기동	신기초등학교		신기4길 15	신기초등학교
		소보면 사리리	경상북도군위 학생아영장	군위군	소보면 소보안계로 531	경상북도군위 학생아영장

현행				개정안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청송군	부남면 하속리	부남초등학교	청송군	부남면 부남로 509	부남초등학교
		부남면 하속리	구천중학교		부남면 부남로 523	구천중학교
		부동면 이진리	이전초등학교		부동면 부동로 1011-74	이전초등학교
		부동면 이진리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부동면 부동로 1011-28	청송중학교부동분교장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청죽리	일월초등학교청기분교장	영양군	청기면 장갈로 1445	일월초등학교청기분교장
		수비면 발리리	수비초등학교		수비면 한티로 499	수비초등학교
		수비면 발리리	수비중학교		수비면 낙동정맥로 2417	수비중학교
		수비면 발리리	수비고등학교		수비면 낙동정맥로 2417	수비고등학교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영덕초등학교창포분교장	영덕군	영덕읍 창포길 2-11	영덕야성초등학교창포분교장
		축산면 경정리	축산향초등학교경정분교장		축산면 경정길 17	축산향초등학교경정분교장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방지초등학교운문분교장	청도군	운문면 운문로 1558	방지초등학교운문분교장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오사리	개진초등학교	고령군	개진면 오사길 83	개진초등학교
		개진면 오사리	고령중학교개진분교장		개진면 오사길 83	고령중학교개진분교장
		우곡면 연리	우곡초등학교		우곡면 객기나무길 374	우곡초등학교
		우곡면 월오리	우곡중학교		우곡면 우곡로 492-19	우곡중학교
경상북도	성주군	선남면 용신리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성주군	선남면 선노로 678	도원초등학교선남동부분교장
		월항면 지방리	지방초등학교		월항면 세종대왕자태실로 211	지방초등학교
경상북도	예천군	상리면 도촌리	상리초등학교	예천군	상리면 도효자로 1558	상리초등학교

현행				개정안		
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리	기관명	기관소재지		기관명
				시·군·구	위 치	
경상북도	봉화군	춘양면 서벽리	서벽초등학교	봉화군	춘양면 춘양로 1424	서벽초등학교
		춘양면 서벽리	춘양중학교서벽분교장		춘양면 춘양로 1490	춘양중학교서벽분교장
		소천면 현동리	소천초등학교		소천면 소천로 1284	소천초등학교
		소천면 현동리	소천중학교		소천면 소천로 1237	소천중학교
		소천면 현동리	소천고등학교		소천면 소천로 1237	소천고등학교
		소천면 분천리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소천면 풍애길 36	소천초등학교분천분교장
		소천면 임기리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		소천면 임기로 29	소천초등학교임기분교장
		석포면 석포리	석포초등학교		석포면 석포로1길 33	석포초등학교
		석포면 석포리	석포중학교		석포면 석포로 226-1	석포중학교
		재산면 현동리	재산초등학교		재산면 재산로 514	재산초등학교
		재산면 현동리	재산중학교		재산면 동면로 34	재산중학교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삼근리	삼근초등학교	울진군	서면 삼근2길 23	삼근초등학교
		근남면 진북리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소관 담당관·과		학 교 지 원 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학교지원과장 지방서기관 김태원
	담당 직위·성명	학교지원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김홍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전미경(053-603-3704)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
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으로
한다.

제 2 조 중 “본청”을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18호 전단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 8 조제1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 9 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동 385번지”를 “강남로

152”로 한다.

제11조제2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통동 110번지”를 “금오산로 198-14”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계양동 478-3번지”를 “원효로 60”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교육행정정보 수집 제공

3. 정보화 교육

6. 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산동 산56번지”를 “새남산길 62”로 한다.

제21조제3호 중 “기타 유관기관”을 “그 밖에 관계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용흥동 418번지의 1”을 “우미길 93”으로 한다.

제24조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를 “강연회·

감상회·전시회·독서회·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소속하에”를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양덕동산 255번지”를 “환호로 50”으로 한다.

제30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을 “법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거무역리 5-41번지”를 “고래불로 201”로 한다.

제34조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한다.

제36조제3항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25조제2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1길 12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4항 관련)

도 서 관 명	위 치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02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주천로 15-11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팔수로 538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중리길 44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월변7길 17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봉래길 128-10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175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중앙로 7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로 152-12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경북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124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3길 13
경상북도립 의동공공도서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로 98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25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중앙로 40-5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경북 고령군 고령읍 향교길 25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경북 문경시 호서로 133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2508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로 101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로 3길 6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173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제32조제4항 관련)

야영장명	위 치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안계로 531
경상북도영덕학생야영장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471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9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김천학생야영장	경북 김천시 대덕면 대덕로 553
경상북도경산학생야영장	경북 경산시 용성면 반룡로 146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지역교육청에 두는 국장·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 여유기구·한시기구에 두는 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17. (생략) 18. 기타 교육·학예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 8 조(행정지원국)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 1 조(목적)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 제 2 조(국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u>경상북도교육청</u> (이하 “본청”이라 한다) …… 제 7 조(교육정책국) …… 1. ~ 17. (현행과 같음) 18. <u>그 밖에</u> …… 제 8 조(행정지원국) ……

현행	개정안
1. ~ 17. (생략) 18. 기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사항 제9조(설치) ① <u>법 제32조의 규정에</u> <u>의하여</u>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연구 하고, 현장연구지도, 교육자료의 제작 · 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하며,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을 통한 경상북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u>소속</u> <u>하에</u>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이하 “연구 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u>점하동</u> <u>385번지</u>에 둔다. 제11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10. (생략) 21. 기타 제9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설치) ① <u>법 제32조의 규정에</u> <u>의하여</u> 교육공무원 및 교육행정을 담 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교육감 <u>소속하에</u> 경상북도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②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u>남통동</u> <u>110번지</u>에 둔다.	1. ~ 17. (현행과 같음) 18. <u>그 밖에</u> 제9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에 따라 <u>소속으로</u> ②..... <u>강남로</u> <u>152</u>..... 제11조(업무) 1. ~ 10. (현행과 같음) 21. <u>그 밖에</u> 제12조(설치) ① <u>법 제32조에 따라</u> <u>소속으로</u> ②..... <u>금오산로</u> <u>198-14</u>.....

현행	개정안
제15조(설치) ①<u>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정보화교육·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감 <u>소속하에</u> 경상북도교육정보센터(이하 “교육정보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u>계양동 478-3번지</u>에 둔다. 제1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생략) <u>전자정보 자료수집 제공</u> <u>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u> <li·5. (생략)<="" li=""> </li·5.> <u>〈신설〉</u> 제18조(설치) ①<u>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빛나는 국민 육성을 위하여 교육감 <u>소속하에</u> 화랑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u>남산동 산56번지</u>에 둔다.	제15조(설치) ①<u>법 제32조에 따라</u> … ……… ……… ……… ……… ……… <u>소속으로</u> …… ……… ②……… <u>원효로 60</u>……… 제17조(업무) …… ……… (현행과 같음) <u>교육행정정보 수집 제공</u> <u>정보화 교육</u> <li·5. (현행과="" li="" 같음)<=""> <u>교육행정업무 전산화 및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u> </li·5.> 제18조(설치) ①<u>법 제32조에 따라</u> … ……… ……… ……… <u>소속으로</u> …… ……… ②……… <u>새남산길 62</u>………

현행	개정안
제21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2. (생략) 3. 기타 유관기관의 위탁수련 및 연수 제22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중·고등학교 과학기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 실험실습, 교원연수,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경상북도민의 과학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과학교육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용흥동 418번지의 1에 둔다. 제 24 조(업무) 과학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10. (생략) 11. 기타 제2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5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의 정보이용·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증진하고, 경상북도민의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교육감 소속하에 경상북도립도서관(이하 “도립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략)	제21조(업무) 1.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관계기관..... 제22조(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소속으로 ②..... 우미 길 93..... 제24조(업무)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제25조(설치) ①법 제32조에 따라 소속으로 ②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27조(업무)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략) 5. <u>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u> <u>기타</u>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6.·7. (생략) 8. 기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8조(설치) ①<u>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교양을 증진 시키며,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 고자 교육감 <u>소속하에</u> 경상북도학생 문화회관(이하 “학생문화회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학생문화회관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u>양덕동 산 255번지</u>에 둔다. 제30조(업무) 학생문화회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4. (생략) 5. <u>기타</u> 문화회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7조(업무) 1. ~ 4. (현행과 같음) 5. <u>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그 밖에</u> 6.·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제28조(설치) ①<u>법 제32조에 따라</u> <u>소속으로</u> ②..... <u>환호로 50</u>..... 제30조(업무)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현행	개정안																												
제31조(설치)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거무역리 5-41번지에 둔다. 제34조(설치)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으로 공공도서관과 학생야영장(이하 "야영장"이라 한다)을 둔다. 제36조(야영장) ①·② (생략) ③ 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략) 6. 기타 야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생략) [별표 1] 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5조제2항 관련) <table> <tr> <th>도서관명</th><th>위치</th></tr> <tr> <td>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td><td>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td><td>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용상분관</td><td>경북 안동시 용상동 1221-3</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td><td>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td></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td><td>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td></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화령분관</td><td>경북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503-1</td></tr> </table>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21-3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503-1	제31조(설치) ①법 제32조 ②..... 고래불로 201 제34조(설치) 법 제32조에 따라 제36조(야영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도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25조제2항 관련) <table> <tr> <th>도서관명</th><th>위치</th></tr> <tr> <td>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td><td>경북 구미시 산책길 41</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td><td>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용상분관</td><td>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td></tr> <tr> <td>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종산분관</td><td>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td></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td><td>경북 상주시 상서문 1길 127</td></tr> <tr> <td>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관화령분관</td><td>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td></tr> </table>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종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 1길 12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원평동 468-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당북동 333-157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용상동 1221-3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풍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리 247-1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남성동 118-3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달천리 503-1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립 구미도서관	경북 구미시 산책길 41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경북 안동시 안기천로 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용상분관	경북 안동시 경동로 884-8																												
경상북도립 안동도서관 관종산분관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리들길 22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경북 상주시 상서문 1길 127																												
경상북도립 상주도서관 관화령분관	경북 상주시 화서면 중화로 2193																												

현행		개정안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제32조제4항 관련)	
도서관명	위치	도서관명	위치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87-8	경상북도립 영덕공공도서관	경북 영덕군 영덕읍 <u>군청길 102</u>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612	경상북도립 성주공공도서관	경북 성주군 성주읍 <u>주천로 15-11</u>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540	경상북도립 영양공공도서관	경북 영양군 영양읍 <u>팔수로 538</u>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줄리리 743-1	경상북도립 의성공공도서관	경북 의성군 의성읍 <u>줄리길 44</u>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158-1	경상북도립 울진공공도서관	경북 울진군 울진읍 <u>월변7길 17</u>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440	경상북도립 울릉공공도서관	경북 울릉군 울릉읍 <u>봉래길 128-10</u>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둔부리 172	삼국유사군위도서관	경북 군위군 군위읍 <u>군청로 175</u>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가흥1동 2-69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경북 영주시 <u>중앙로 7</u>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성내4리 142-3	경상북도립 영주공공도서관 풍기분관	경북 영주시 풍기읍 <u>남원로 152-12</u>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경북 청도군 청도읍 고수리 508	경상북도립 청도공공도서관	경북 청도군 청도읍 <u>천화로 124</u>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730-11	경상북도립 칠곡공공도서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u>군청3길 13</u>
경상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	경북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443-3	경상북도립 외동공공도서관	경북 경주시 외동읍 <u>입실로 98</u>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2리 438-1	경상북도립 청송공공도서관	경북 청송군 청송읍 <u>군청로 25</u>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남분리 222-15	경상북도립 예천공공도서관	경북 예천군 예천읍 <u>중앙로 40-5</u>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경북 고령군 고령읍 연조리 599-2	경상북도립 고령공공도서관	경북 고령군 고령읍 <u>향교길 25</u>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경북 문경시 흥덕동 348-1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경북 문경시 <u>호서로 133</u>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왕릉리 292-2	경상북도립 점촌공공도서관 가은분관	경북 문경시 가은읍 <u>대야로 2508</u>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	경북 포항시 북구 <u>홍해읍 약성리 100-2</u>	경상북도립 영일공공도서관	경북 포항시 북구 <u>홍해읍 홍해로 101</u>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194-4	경상북도립 봉화공공도서관	경북 봉화군 봉화읍 <u>내성로 3길 6</u>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30-2	경상북도립 영천금호공공도서관	경북 영천시 금호읍 <u>금호로 173</u>

현행		개정안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2조제4항 관련)		[별표 3] 학생야영장의 명칭 및 위치 (제32조제4항 관련)	
야영장명	위치	야영장명	위치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장연리 산8	경상북도청도학생야영장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장길 155-27
경상북도안동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산40-1	경상북도안동학생야영장	경북 안동시 도산면 녹전로 20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상오리 562	경상북도상주학생야영장	경북 상주시 화북면 문장로 1503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리 631	경상북도울진학생야영장	경북 울진군 근남면 진북길 1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 444	경상북도포항학생야영장	경북 포항시 북구 죽장면 죽장로 2805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경북 군위군 소보면 사리리 97-1	경상북도군위학생야영장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소보안개로 531
경상북도영덕학생야영장	경북 영덕군 창수면 미곡리 583	경상북도영덕학생야영장	경북 영덕군 창수면 오서로 471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수평리 390	경상북도문경학생야영장	경북 문경시 동로면 금천로 1850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교선리 산10	경상북도봉화학생야영장	경북 봉화군 소천면 홍점길 31
경상북도김천학생야영장	경북 김천시 대덕면 연화리 255	경상북도김천학생야영장	경북 김천시 대덕면 대덕로 553
경상북도경산학생야영장	경북 경산시 용성면 용천리 152-2	경상북도경산학생야영장	경북 경산시 용성면 반룡로 146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달계리 1513	경상북도의성학생야영장	경북 의성군 다인면 자미로 492

소관 담당관·과		행정예산과
입 안 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행정예산과장 지방서기관 문영규
	담당 직위·성명	조직관리담당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임홍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보 김은경(053-603-3664)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효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조례 제 호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으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 기타교육기관장 · 각급학교장”을 “지역교육청교육장 · 직속기관장 · 각급학교장”으로 한다.

제 2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2 조(지휘 · 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 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

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 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
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 5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5 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
2. 공·사립의 유·초·중·일반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지원, 장학자료 개발 및 독서교육 지도
3.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 및 징계 요구
5. 학생야영장의 운영 지도·감독
6. 공·사립의 유·초·중·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
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
상담에 관한 사항
7. 제1호 각급학교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8.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
9.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폐지 및 지도·감독

10.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미, 안동, 상주도서관 제외)
11. 제1호 각급학교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12. 제1호 각급학교의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13. 제6호 각급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학교급식 점검 및 운영 지도
 - 나.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징수
 - 다. 학교 보건·위생 점검 및 운영 지도
 - 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학습환경 등 조사·검토
14.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서 발급
15. 제13호 각급학교(단,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외)의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6. 제15호 각급학교의 학생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17.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타교육기관(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직속기관 제외)에 대한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용 및 강임 제외) 및 경징계

- 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승진임용 제외) 및 경징계
- 다.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
- 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겸직허가
- 마.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
- 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교육장 제외)
- 사.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 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확정
- 18.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 유·초·중·공민
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 가.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내 정수배정·정수감축(임시 차량
정수배정포함)
- 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차종·차형 변경, 차량교환의 승인
- 19.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
- 20.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 21. 제6호 각급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2. 제1호 각급학교의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 23. 제1호 각급학교의 학생 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 24.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개인인 사립학교
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규칙
인가
- 25.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사립학교 경
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26.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허가
27.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 유지법인의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및 장기차입 승인
28.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29. 제1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승인
30. 제1호의 각급학교 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 포함)·사용 승인
31. 제1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32. 제1호 각급학교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
33. 교육행정기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34. 교육행정기관 청사 실시계획 인가신청

제 6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

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
2. 학생운동 경기대회 참가
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확정(고등학교·특수학교장)
4.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제 7 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1.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 재확정
2.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2년 5월 7일
제 출 자 : 교 육 위 원 장

1. 수정이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지 않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골자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8호에
‘설·폐’를 ‘설립·폐지’로 하며,
제5조 9호에
‘설·폐’를 ‘설립·폐지’로 한다.

3. 참고사항 : 없음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 8호

‘설·폐’를 ‘설립·폐지’로 하며,

제5조 9호

‘설·폐’를 ‘설립·폐지’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기타교육기관장·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위임사항) 교육감의 권한 중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각급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 1 조(목적) …………… …………… 제26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 …………… …………… …………… 지역교육청교육장·직속기관장·각급 학교장 …………… …………… …………… …………… …………… …………… …………… 제 2 조(지휘·감독)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 조(목적)(개정안과 같음) 제 2 조(지휘·감독)(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u>제 3 조(지휘·감독)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u> <u>제 4 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u> <u>제 5 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u>	<u>제 3 조(사전승인의 억제)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u> <u>제 4 조(명의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u> <u>제 5 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한다.</u> 1. 공·사립의 유·초·중·국민학교·고등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지원	<u>제 3 조(사전승인의 억제) (개정안과 같음)</u> <u>제 4 조(명의표시) (개정안과 같음)</u> <u>제 5 조(지역교육청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개정안과 같음)</u> 1.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2. 공·사립의 유·초·중·일반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지원, 장학자료 개발 및 독서교육 지도</u> <u>3. 중학교 특별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u> <u>4. 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 및 정계 요구</u> <u>5. 학생야영장의 운영 지도·감독</u> <u>6. 공·사립의 유·초·중·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u> <u>7. 제1호 각급학교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u>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5.(개정안과 같음) 6.(개정안과 같음) 7.(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8.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폐 및 지도· 감독</u> <u>9. 학교형태의 평생교 육시설을 제외한 평 생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u> <u>10. 도서관의 운영 지 도·감독(구미, 안동, 상주도서관 제외)</u> <u>11. 제1호 각급학교의 과 학 · 기 술 교 육 진흥에 관한 사항</u> <u>12. 제1호 각급학교의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u> <u>13. 제6호 각급학교와 특수학교에 대한 다 음 각 목에 관한 사항</u> <u>가. 학교급식 점검 및 운영 지도</u> <u>나. 「학교급식법 시행 령」 제17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 과·징수</u>	<u>8.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립·폐지 및 지도· 감독</u> <u>9. 학교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을 제외한 평생교 육시설의 설립·폐지 및 지도·감독</u> 10.(개정안과 같음) 11.(개정안과 같음) 12.(개정안과 같음) 13.(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가.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신규임용·승진임용 및 강임 제외) 및 경징계</u> <u>나. 기능직공무원의 임용(승진임용 제외) 및 경징계</u> <u>다.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 중 대우공무원 선발</u> <u>라.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겸직허가</u> <u>마. 임시회계직 공무원의 임면</u> <u>바.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단, 교육장 제외)</u> <u>사.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u> <u>아.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확정</u> <u>18.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공립 유·초·중·국민학교·고등국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u>	18.(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25. 제1호의 사립각급 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의 지 도·감독</u>	25.(개정안과 같음)
	<u>26. 제1호의 사립각급 학교를 유지 경영 하는 학교법인의 기 본재산 매도·증여· 교환·용도변경·담 보·의무부담 및 권 리의 포기허가</u>	26.(개정안과 같음)
	<u>27. 제1호의 사립각급 학교 유지법인의 예 ·결산에 관한 지도 ·감독 및 장기차입 승인</u>	27.(개정안과 같음)
	<u>28. 제1호의 사립각급 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결산에 관한 지 도·감독</u>	28.(개정안과 같음)
	<u>29. 제1호의 사립각급 학교를 유지 경영 하는 학교법인의 임 원 취임 승인(임시 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승인</u>	29.(개정안과 같음)
	<u>30. 제1호의 각급학교 시설의 건축승인(건 축신고 포함)·사용 승인</u>	30.(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u>31. 제1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u>	31.(개정안과 같음)
	<u>32. 제1호 각급학교 시 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u>	32.(개정안과 같음)
	<u>33. 교육행정기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u>	33.(개정안과 같음)
	<u>34. 교육행정기관 청사 실시계획 인가신청</u>	34.(개정안과 같음)
<u>제 6 조</u> <u>〈삭제 2005. 6. 23〉</u>	<u>제 6 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 감은 다음의 권한을 각 급학교장에게 위임한다.</u> <u>1.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감독 (초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장)</u> <u>2. 학생운동 경기대회 참가</u> <u>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고등학 교·특수학교장)</u> <u>4.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u>	<u>제 6 조(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개정 안과 같음)</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 표] 교육장·기타교육기관장· 각급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table border="1"> <tr> <th>소관별</th><th>건 명</th><th>수임 기관</th></tr> <tr> <td>공통</td><td>1. 공·사립의 유·초·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지원</td><td>교육장</td></tr> <tr> <td>교육 과정과</td><td>1. 공·사립의 유·초·중· 일반계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고등기 술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 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지원</td><td>교육장</td></tr> </table>	소관별	건 명	수임 기관	공통	1. 공·사립의 유·초·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지원	교육장	교육 과정과	1. 공·사립의 유·초·중· 일반계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고등기 술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 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지원	교육장	<u>제 7 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교육 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 한다.</u> <u>1.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재획정</u> <u>2. 6급 이하 일반직 공 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u> 〈삭 제〉	<u>제 7 조(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개정 안과 같음)</u> 〈삭 제〉
소관별	건 명	수임 기관									
공통	1. 공·사립의 유·초·중·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지원	교육장									
교육 과정과	1. 공·사립의 유·초·중· 일반계고· 공민학교· 고등공민학 교·고등기 술학교 및 이 에 준하는 각 종학교에 대한 컨설팅 장학 지원	교육장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2. 제1호 각급 학교의 장학자료 개발 및 독서교육 지도 3. 중학교 특별 장학금 선발 및 장학금 지급 4. 학생야영장의 운영지도·감독 5. 공·사립의 유·초·중·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부모의 학교 참여, 연수·상담에 관한 사항 6.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특수교육, 학교 부적응 교육, 진로 교육, 지도에 관한 사항	교육장 " " " " "	〈삭 제〉	〈삭 제〉
교원 지원과	1. 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교원의 임용 보 고 수리 및 정계 요구 2. 교육실습생 배정동의 및 지도·감독	교육장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장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과학 직업 교육과	1. 학원(교습소 포함)의 설·폐 및 지도·감독	교육장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평생교육시설의 설·폐 및 지도·감독	"		
	3. 도서관의 운영지도·감독(구비, 안동, 상주 도서관 제외)	"		
	4. 공·사립의 유·초·중·고·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과학·기술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5. 제4호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 진흥에 관한 사항	"		
체육 건강과	1. 학생운동 경기대회 참가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특수학교장		
	2. 공·사립의 유·초·중·고·특수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대한 다목적에 관한 사항	교육장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가. 학교급식 점검 및 운영지도	교육장	<u>〈삭 제〉</u>	<u>〈삭 제〉</u>
	나. 「학교급식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출입 ·검사·수 거 등, 행정 처분 등의 요청 및 과 태료 부과 ·징수	"		
	다. 학교 보건 ·위생 점 검 및 운영 지도	"		
	라. 「학교보건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학습 환경 등 조 사·검토	"		
	3. 학교환경위 생 정화구역 내의 금지행 위 및 시설의 심의 및 의견 서 발급	"		
체육 건강과	4. 제2호 각급 학교(단, 고 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제 외)의 저소득 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 에 관한 사항	교육장		
	5. 제2호 각급 학교(단, 고 등학교, 고등 기술학교 제 외) 학생의 안 전 및 건강에 관한 사항	"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입기관		
총무과	1. 교육청 및 관 할지역 유· 초·중·공민 학교·고등 공민학교· 기타교육기 관(장학관· 교육연구관 및 4급 이상 공무원을 장 으로 하는 기 타교육기관 제외)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6급 이하 일반직공 무원의 임 용(신규임 용·승진 임용 및 강 임제외) 및 경징계 나. 기능직공 무원의 임 용(승진임 용제외) 및 경징계 다. 6급 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 무원중 대 우공무원 선발 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 원의 겸직 허가 마. 임시회계 직 공무원의 임면 바. 소속 공무 원의 공무 국외여행 허가(단, 교육장, 기 타교육기 관장 제외)	교육장 " " " " " " "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삭제〉	〈삭제〉
	2.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장, 특수학교장, 기타교육기관장(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3. 일반직 및 기능직 공무원의 정기승급과 호봉제	교육장·고등학교·특수학교장·기타교육기관장(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4.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 부여	기타교육기관장(장학관·교육연구관 및 4급이상공무원으로 하는 기타교육기관)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삭제〉	〈삭제〉
총무과	5. 교육청, 소속기관, 공립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관용차량 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 내 정정수배정, 정정수감축(임정수차량정정수배정포함) 나. 동종·동형의 차량교체, 차종차형변경, 차량교환의 승인	교육장 " "		
행정예산과	1. 교육장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결정 및 교부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교육장 "		
학교지원과	1. 유치원·공민학교의 설립·폐지인가 2. 공·사립의 유·초·중·고·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장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3. 공·사립의 유·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 4. 제3호 각급학교의 학생통학 구역에 관한 사항 5. 제3호 각급학교의 학칙인가 6.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칙인가 7.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사립학교경영자 포함)의 지도·감독 8.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담보·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허가 9.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유지법인의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삭 제〉	〈삭 제〉

현행			개정안	
소관별	건명	수임기관		
	10.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의 운영관리 및 예·결산에 관한 지도·감독 11.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유지법인의 장기차입 승인 12. 제3호의 사립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임시이사 선임 제외) 및 이사회 소집승인			
재무정보과	1.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	공립유치원장, 공·사립고등학교장	〈삭 제〉	〈삭 제〉
교육시설과	1. 공·사립 유치·초·중·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시설의 건축승인(건축신고 포함) 및 사용승인	교육장		
	2. 제1호 각급학교의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	"		
	3. 제1호 각급학교 시설 안에서 행위에 관한 협의	"		
	4. 교육행정기관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	"		
	5. 교육행정기관 청사 실시계획 인가신청	"		

■ 결 의 안

- 한·미 FTA 추가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 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한·미 FTA 추가 보완대책 및 한·중 FTA 농어업분야 제외 촉구 결의안

한·미 FTA가 오랜 논란 끝에 지난 3월 15일자로 공식 발효되었다. 대외 무역의존도가 90%를 넘고 수출규모가 세계 7위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라는 글로벌 경제흐름을 전면적으로 거부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미 FTA가 국가 전체의 이익과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하여도 대외경쟁력이 취약한 농축산업의 암울한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미 FTA 발효로 전체 농축산물의 32.8%인 636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쌀과 관련된 16개 품목만을 제외한 모든 품목이 최장 15년까지 무관세 또는 저율관세로 개방되어 한국 농축산업의 기반이 뿌리째 붕괴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농업피해액의 34.6%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경북의 농업은 향후 한·미 FTA 발효 15년차 농업생산 감소액이 4천 415억원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이미 지난 2006년 8월 28일과 2007년 4월 5일 한·미 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강력히 결의·촉구한 바 있으며, 경상북도지사 또한 2012년 3월 15일 중앙정부에 농어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정부에서는 아직도 그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어놓지 않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농업인들의 절박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기후·재배작물도 비슷해 피해 대책을 수립할 수 없을 정도의 위협이 예상되는 중국과의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생명산업이자 안보산업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중국의 농업은 FTA가 체결되지 않은 현 수준에서도 국내 농산물 시장을 엄청난 속도로 압박하고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조차 2010~2011년 31개 주요농산물 도매가격중 28개는 한국이 중국보다 2배 이상 높았고, 그중 25개는 3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농축산물 관세가 철폐되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농어업의 일방적인 희생위에 한·미 FTA가 이루어지는 만큼 피해보전은 물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어업인들의 생존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중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시킬 것을 300만 도민과 함께 우리 경상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과 농어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대통령직속
「국무총리, 관계부처장관, 도지사, 도의회 의장, 농어민
대표」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합의기구인 (가칭) 「FTA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라 !

둘째, FTA 수혜업종 이익금을 농어업에 재투자할 수 있는
(가칭) 「FTA 피해보전 특별법」을 만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 2014년 만료 예정인 농어촌특별
세를 영구화 하라 !

셋째, 2015년 12월말로 만료되는 농림어업용면세유를 영구
화토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일몰기간 단서조
항을 삭제하고,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국제
곡물가 급등시 충격을 완화하라 !

넷째, 미국산 오렌지의 계절관세 적용으로 직접 소비가 경합
되는 참외, 자두, 수박 등 간접피해 품목도 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대상품목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특별 지원대책을 마련하라 !

다섯째, 축산과 과수산업이 전국 최대 주산지인 경북은 한·
미 FTA의 최대 피해 지역이므로 피해를 규모에 따라
정부지원 24조원 중 8조원 이상 경상북도에 지원
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라 !

여섯째, 농어업의 보호대책 하나없이 농어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한·중 FTA 협상에 “농어업분야”를
반드시 제외하라 !

2012년 5월 11일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 정 활 동 보 고 서

(제252회 임시회·제253회 임시회·제254회 임시회)



2012. 5 인쇄 / 2012. 5 발행

발행 / 경 상 북 도 의 회

편집 / 의 사 담 당 관 실

전 화 : 602-5284

FAX : 602-5140



<비매품>